

#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연구

전병목·송은주·서희진

2023. 9.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전 병 목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송 은 주 책임연구원

서 희 진 공인회계사

# 목 차

I. 서론 .....	7
II.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과세제도 .....	11
1. 기업 형태별 과세체계 .....	11
2.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와 법인 과세 차이 .....	12
가. 과세소득의 범위 .....	14
나. 세무상 비용 인정 기준 .....	15
다. 세율 .....	21
라. 이익의 분배 .....	22
3.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	23
4. 유보소득 과세제도(안) .....	28
III. 조사대상국의 개인사업자와 법인 과세제도 .....	31
1. 미국 .....	31
가. 기업 형태별 과세체계 .....	31
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과세 차이 .....	34
다.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	44
라. 유보이익 과세제도 .....	48
2. 일본 .....	50
가. 기업 형태별 과세체계 .....	50
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과세 차이 .....	52

다.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	62
라. 유보소득 과세제도 .....	64
3. 영국 .....	67
가. 기업 형태별 과세체계 .....	67
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과세 차이 .....	68
다.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	78
4. 독일 .....	82
가. 기업 형태별 과세체계 .....	82
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과세 차이 .....	84
다. 유보이익 과세제도 .....	92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	94
1. 국제비교 .....	94
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무상 비용 인정 기준 .....	94
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율 .....	100
다.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	101
라. 유보소득 과세제도 .....	106
2. 시사점 .....	108
가. 개인유사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 가능성 제한 필요성 .....	108
나.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타당성 재검토 .....	111
참고문헌 .....	116

## 표 목차

〈표 II-1〉 우리나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	17
〈표 II-2〉 우리나라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 적용률	18
〈표 II-3〉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세율(2023년)	22
〈표 II-4〉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의 업무용승용차 세무상 비용 한도	26
〈표 II-5〉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상 비용 한도	26
〈표 III-1〉 미국 소득세율(2023년)	42
〈표 III-2〉 일본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59
〈표 III-3〉 일본 법인세율	60
〈표 III-4〉 일본 동족회사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세율	66
〈표 III-5〉 영국 업무용 차량 자본공제 비율	71
〈표 III-6〉 영국 간편법에 차량비용 산출을 위한 마일당 고정비율	73
〈표 III-7〉 영국 개인사업자 소득세율(2023/24년)	76
〈표 III-8〉 영국 법인세율(2023년 4월 이후)	77
〈표 III-9〉 독일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90
〈표 IV-1〉 조사대상국의 업무용 차량과 접대비 과세제도 비교	96
〈표 IV-2〉 조사대상국의 주주인 대표자 인건비 과세제도 비교	98
〈표 IV-3〉 조사대상국의 주주인 대표자 대여금 과세제도 비교	100
〈표 IV-4〉 조사대상국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율 비교	101
〈표 IV-5〉 조사대상국의 개인유사법인 기준	103

〈표 IV-6〉 조사대상국의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	105
〈표 IV-7〉 조사대상국의 유보소득 과세제도 .....	107

# I. 서론

- 법인이 이익을 전부 배당한다고 가정할 때,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총 세 부담이 높고 운영비용도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익에 대해 소득세로 과세가 종료되지만, 법인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후 배당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여 1인 주주인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총 세 부담이 높아짐<sup>1)</sup>
  - 법인은 등기임원이나 이사, 감사, 이사회 등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운영 구조를 가지며, 법인의 중요 사항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
  
- 이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사업 형태보다 세 부담 및 관리 측면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는 개인유사법인이 증가하고 있음
  - ‘개인유사법인’이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법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1인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의해 지배되는 소규모법인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개인유사법인을 일반법인과 구분하여 규정하는 이유는, 1인 및 그 특수관계자에 의해 지배되는 특성상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에 더 가깝기 때문임
  
- 우리나라에서 개인유사법인의 비중은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에 정부는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에

---

1) 이중과세 조정제도가 있지만, 이중과세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님

대하여 일부 비용의 손금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8년에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시행하였음

- 2017년에는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을 대상으로 업무용승용차비용 및 기업업무 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50% 축소하였음
  - 이는 부동산 임대 및 자산소득 절감 목적의 법인 설립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
- 2018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 또는 법인전환 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음
  - 당시 성실신고확인제도<sup>2)</sup>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였으나,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다수 목격됨에 따라,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과 비용항목의 축소 한도를 적용하는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임

□ 이러한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인유사법인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국세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1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은 2014년 14만개로 전체 법인의 23%였으나, 2018년에는 25만개로 전체 법인의 30%로, 2020년 31만개로 전체 법인의 33%로 증가하였음
  - 1인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으로 확대할 경우, 더 많은 수의 개인유사법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sup>3)</sup>

2) 2012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가 성실히 이루어졌음을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받는 제도로, 소득세 세원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도입되었음

3) 국회의원 용혜인, 「개인유사법인 큰폭 증가세...소득세 탈루통로 방치 상태」, 보도자료, 2021. 10. 6.

(단위: 만개,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1인 100% 지분법인(A)	14	16	19	22	25	28	31	14.2
전체 가동법인(B)	62	67	73	77	82	87	95	7.4
A/B	23	24	26	29	30	32	33	

- 개인유사법인이 소득세 명목으로 과세되어야 할 부분을 법인 소득으로 유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시행에 이르지 못하였음
- 시행이 보류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 및 과세 행정상의 어려움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 형태를 선호하는 원인을 조세제도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데,<sup>4)</sup> 개인유사법인은 개인사업자와 실질이 동일함에도 달리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법인으로 사업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소득세의 경우 10억원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 최고세율인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한편, 법인세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 19%의 세율이 적용되어, 법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됨
  - 법인의 경우 소득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함으로써 과세를 이연하는 효과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소득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법인과 1인 주주 개인의 소득 및 재산을 분리하여 과세되어 누진세를 회피할 여지가 있음
  - 매출규모 면에서 개인사업자라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 경우라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사대상이 될 확률은 현저히 낮아짐<sup>5)</sup>
  - 자녀가 법인에 금전을 출자하여 지분을 늘릴 경우, 부의 이전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음
- 우리나라는 과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한 바

4) 세법에서는 법인격 유무의 기준에 의해 자연인은 「소득세법」,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해 과세하고 있음. 즉, 법인세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함. 즉, 과세는 법인격 유무에 따라 구분할 뿐 규모 및 주주에 따른 구분은 없음

5) 조남철(2019), p. 39.

있으나,<sup>6)</sup> 현재는 오히려 법인전환을 통해 소득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인의 조세회피 정도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제도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함

□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과세형평성 검토를 위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제도 차이를 살펴보고 개인유사법인에 적용되는 비용의 손금한도 제한 및 성실신고확인제도와 2020년 제안되었던 유보소득 배당간주과세제도에 대해 살펴봄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과세상 차이를 과세소득의 범위, 세무상 비용처리 기준, 세율, 이익의 분배 측면에서 살펴봄
  - 비용처리 기준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업무용 차량비용,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대표자 인건비와 대여금 등과 같은 대표자 자금인출 항목을 조사대상으로 함
- 비용의 손금한도 제한 및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유보소득 배당간주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개인유사법인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조사대상국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에서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제도 차이, 개인유사법인에 적용되는 과세제도, 유보소득 과세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보고서는 제 I 장 서론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 II 장과 제 III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기업 형태별 과세 체계,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과세제도,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대해 살펴봄
  - 제 IV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조사대상국 간 국제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함

6) 2000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2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를 통해 5,000만원인 자본금 제한을 완화했고, 2001년 상법개정에서 물적회사의 1인에 의한 설립을 본격 허용하였음

## II.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과세제도

### 1. 기업 형태별 과세체계

- 우리나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형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 2인 이상 조합원이 동업할 목적으로 결합한 조합, 「상법」상 회사 형태를 갖춘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는 출자자인 사업주가 권리 의무 주체가 되어 영업활동을 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장 단순한 기업 형태임
  -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하며, 「민법」상 조합에 대해서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음<sup>7), 8)</sup>
    - 조합원은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조합원 각자 업무집행권을 가짐<sup>9)</sup>
    - 조합재산의 소유관계는 합유(合有)로 하며, 조합의 사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과 손실은 각 조합원에게 돌아감
    -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그의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외에 조합원 전원이 조합재산을 가지고 공동으로 책임짐
  - 법인은 출자자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법적 주체이며, 법인은 출자자인 주주와는 별개로 그 자체가 독립된 인격체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 우리나라 「상법」상 모든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 회사)는 법인임<sup>10)</sup>

7) 「민법」 제703조

8) 김완석·정지선(2018), p. 136.

9) 조합이 외부의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조합 자신의 이름으로서가 아니고 언제나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함

10) 「상법」상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하며, 사원의 책임 범위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정하고 있음(「상법」 제169조 및 제170조)

- 개인사업자와 조합의 각 조합원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됨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sup>11)</sup>
  -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조합을 조합원의 소득도관으로 이해하며, 조합이 소득을 얻는 경우에 조합 자체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고 조합 단위로 계산한 과세소득금액을 소득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각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움
  - 법인은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sup>12)</sup>
    - 그러나 인적회사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각 사원이 법인세나 소득세를 낼 수 있음

## 2.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와 법인 과세 차이

- 우리나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의 소득개념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sup>13)</sup>
  - 「법인세법」의 과세소득개념은 순자산 증가설 내지 포괄적 소득개념임
    -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소득의 계산단위로, 법인에 대하여는 자유나 사생활의 침해라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포괄 소득개념을 따라 과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순자산이 늘었는가를 물을 뿐 소득의 종류나 원천을 묻지 않음<sup>14)</sup>
  - 「소득세법」의 소득개념은 소득원천설 내지 제한적 소득개념으로, 법에서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소득으로 함<sup>15)</sup>

11) 「소득세법」 제2조

12) 「법인세법」 제3조

13) 이창희(2021), pp. 773~774.

14)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정한 듯한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소득의 개념과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특칙, 귀속시기 등 법적 평가의 단위에 관한 규정, 소득의 개념에 관한 확인규정 따위가 뒤섞인 것임

15) 삼일아이닷컴, 「소득세법 조문별해설」, [https://www.samili.com/tax/jomunhaesul/explain\\_tax.asp?code=2-20:3-1-2&jo=3&sw=%EA%B0%9C%EC%9D%B8%5E%EB%B2%95%EC%9D%B8%](https://www.samili.com/tax/jomunhaesul/explain_tax.asp?code=2-20:3-1-2&jo=3&sw=%EA%B0%9C%EC%9D%B8%5E%EB%B2%95%EC%9D%B8%)

- 법에서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소득으로 한다는 것은, 개인은 법인과 달리 법정자본금을 확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순자산의 증감을 계산하거나 일정기간의 모든 소비생활을 모두 계측하여 순자산 증감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을 원천별로 열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것임

□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비슷한 방식으로 산정되며, 익금총액과 총수입금액, 그리고 손금총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은 서로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것임<sup>16)</sup>

-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며<sup>17)</sup>,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함<sup>18)</sup>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공제한 것임<sup>19)</sup>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sup>20)</sup>,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sup>21)</sup>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과세제도 차이를 과세소득 범위, 세무상 비용 인정 기준, 세율, 이익의 분배로 구분하여 비교하기로 함

---

5E%EA%B3%BC%EC%84%B8%EC%86%8C%EB%93%9D%5E%EB%B2%94%EC%9C%84&srchFlag=true#content\_body, 검색일자: 2023. 6. 30.

16)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17)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18)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19)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20)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2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 가. 과세소득의 범위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의 범위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경우로 구분하여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국내 거주자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함
  
-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며,<sup>22)</sup>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1호에 열거되어 있음
- 제1호부터 제18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① 농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운수 및 창고업,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⑩ 정보통신업, ⑪ 금융 및 보험업, ⑫ 부동산 업,<sup>23)</sup> 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한 연구개발업 제외), ⑭ 사업 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⑮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 기관 제외), ⑯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회복지사업 제외), 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⑱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제19호.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20호.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제21호.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얻는 소득

22) 「소득세법」 제3조

23)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

-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에 있어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을 수익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함
-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청산소득, ③ 토지 등 양도소득임<sup>24)</sup>
  -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일반적인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포함됨
-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국내원천 소득으로 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도 과세소득 범위에 포함됨<sup>25)</sup>
- 이하에서는 법인을 영리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논의를 이어나감

## 나. 세무상 비용 인정 기준

- 이 절에서는 사업주의 사적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무용 차량비용, 기업 업무추진비(접대비), 대표자 인건비, 자금인출과 관련된 규정을 중점으로 개인사업자(「소득세법」)와 법인의(「법인세법」) 규정 차이를 비교함

### 1) 업무용 차량비용<sup>26)</sup>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됨
-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에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됨
- ③ 또한 고가차량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를 두고 있음

24)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25) 「법인세법」 제4조 제4항

26)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2020.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적용대상) 법인은 모든 법인이 적용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적용대상임<sup>27)</sup>
    - 간편장부대상자는 적용대상이 아님(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규정 적용되지 않음)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모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존재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를 보험가입대상으로 하고, 이 중 업무용 승용차 1대는 제외함<sup>28)</sup>
    -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 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 처분함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대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하나, 1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함(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 이외인 사업자는 2024년과 2025년에 한해 50% 인정함)
  -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시 상각방법과 내용 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복식부기사업자와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방법과 내용 연수가 정액법과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연 손금산입한도는 800만원임
  -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 시 해당 손익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수익/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나,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소득 계산에 포함함<sup>29)</sup>
    - 단,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27)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하여 2016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확대 적용됨

28) 2023년 2월 28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됨. 종전 규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의무가입대상이었으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에는 관련비용의 5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음. 참고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는 2021년에 신설됨

29) 2016년부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손익을 과세함(「소득세법」 제33조의2 제3항)

한도로 손금(필요경비) 산입함

- 단,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의 경우 일반법인과 달리 손금한도 등이 축소되어 적용됨

〈표 II-1〉 우리나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사업자	
적용대상 여부	X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여부	X	1대 제외한 보유 차량 모두	보유
보험 미가입 시	전액 필요경비 인정	1대: 업무사용비율 1대 초과: 필요경비 인정 X <sup>1)</sup>	손금 인정 X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감가상각	정액법 또는 정률법 내용연수: 4~6년(±25%)	2017. 1. 1. <sup>2)</sup> 이후 취득한 승용차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 손금산입한도: 800만원	2016. 1. 1. 이후 취득한 승용차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 손금산입한도: 800만원
처분손익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음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산입 (단, 처분손실은 한도 이월 규정 적용)	각사소득금액에 포함 (단, 처분손실은 한도 이월 규정 적용)

주: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 이외인 사업자는 2024년과 2025년에 한해 50% 인정함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 1. 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됨

- 이외 운행기록부 작성 비치 의무와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에 있어서는 복식부기의 무자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다름
    -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sup>30)</sup>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간 최대한도는 1,500만원

**2)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상 비용 인정 기준은 동일함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또는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은 ① 기본금액과 ②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①+②)으로 함<sup>31)</sup>
    - ① 기본금액: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② 수입금액×다음의 적용률

〈표 II-2〉 우리나라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 적용률

(단위: %)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3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수입금액-100억원)×1만분의 20]
500억원 초과	1억 1천만원+[(수입금액-500억원)×1만분의 3]

자료: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기업업무추진비 안분 계산이 다름
  - 법인의 경우 사업장의 구분을 무시하고 한도액을 계산하는 데 반하여,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한 경우 사업장별로 한도액을 안분함<sup>32)</sup>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액은 사업장별로 기본금액과 수입금액 기준액을 구분하여 계산함

30)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를 말함

31)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 ① 기본금액:

$$1,200\text{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times \frac{\text{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text{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

- ② 수입금액 기준액: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적용률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함<sup>33)</sup>

### 3) 대표자 인건비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사업주)에 대한 급여 개념이 없기에 개인사업자 인건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법인의 경우 법인과 주주인 대표자가 별도의 실체임에 따라 주주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 개념이 존재하며, 주주인 대표자의 적정 급여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됨
  - 법인이 주주인 대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sup>34)</sup>
    - 주주인 대표자는 지배주주 등인 임원을 말하며,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소유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함
  - 개인사업자 급여는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우 또한 같음<sup>35)</sup>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 제4항

34)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35) 「소득세법」-기본통칙 27-55…3

#### 4) 자금인출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중 하나는 사업체의 자금을 인출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는지 여부임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 자체가 사업체의 출자자이면서 경영자이므로 자금이 필요할 때 즉각 개인자금을 사업체에 투입할 수 있고, 투입된 자금을 사업 이외의 용도로 인출할 수도 있음
  - 법인의 경우에는 법률상 출자자인 주주나 경영자인 대표자와 법인이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이 엄격히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함
    - 법인과 대표자는 엄격히 구분되는 주체이기에 법인 자금을 무분별하게 인출하거나 사적 유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음<sup>36)</sup>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자금을 인출할 경우 출자금의 인출로 보아 별도의 제재가 없으나, 초과인출금 발생 시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가사관련경비로 필요경비에 불산입됨
  - 초과인출금이란 부채(충당금과 준비금은 제외)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sup>37)</sup>
  -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sup>38)</sup>

$$=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당해 과세기간중 초과인출금의 적수}}{\text{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말하며,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함

36)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 6553 판결)

37)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3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

- 법인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자금 대여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수취하여야 함<sup>39)</sup>
  -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sup>40)</sup>
  -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해당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의 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가지급금 인정이자)<sup>41)</sup>

#### 다. 세율

- 개인사업자는 8단계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소 6%에서 최대 45% 누진세율을 부담하며, 법인은 4단계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소 9%에서 최대 24% 누진세율을 부담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42%, 10억원 초과인 경우 45% 누진세율을 부담함
  -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이 2억원 이하인 경우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인 경우 21%, 3,000억원 초과인 경우 24% 누진세율을 부담함

---

39) 「법인세법」 제28조

40)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표 II-3〉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세율(2023년)

개인사업자		법인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1,400만원 이하	6%	2억원 이하	9%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000억원 초과	24%
10억원 초과	45%		

자료: 「소득세법」 제55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 라. 이익의 분배

- 개인사업자는 직접 사업소득의 귀속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익 분배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법인은 주주에게서 독립된 별개의 실체로 소득의 귀속주체가 되고, 이후 배당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득을 주주에게 귀속시킴
- 법인의 경우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배당 시 주주 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주주가 개인인 경우 임퓨테이션 방식의 배당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음<sup>42)</sup>

42) 김진수(2004), pp. 17~42.

- 임퓨테이션 방식(imputation)은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이하 귀속 법인세(또는 gross-up 금액))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그 귀속법인세를 소득세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임
    - 주주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 산정 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귀속법인세 + 다른 종합소득) × 세율 - 배당세액공제(귀속법인세)
    - 귀속법인세는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0<sup>43)</sup>
  -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함
- 배당세액공제제도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배당소득이어야 함<sup>44)</sup>
- ① 법인이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어야 함
  - ②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어야 함
  - ③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한 소득이어야 함<sup>45)</sup>
    - 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개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sup>46)</sup>

### 3.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 '개인유사법인'이란 법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1인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의해 지배되는 소규모법인을 의미함<sup>47)</sup>

43)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는 배당 가산율이 10%로 조정됨(기획재정부(2023. 7. 27.), p.105)

44)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삼일아이닷컴, 「배당소득금액 조문해설」, [https://www.samili.com/tax/dan/frame\\_dan.asp?code=2-2:26.3&div=tax&layerCheck=d](https://www.samili.com/tax/dan/frame_dan.asp?code=2-2:26.3&div=tax&layerCheck=d), 검색일자: 2023. 6. 28.

45) 「소득세법」 제56조 제4항

46) 김진수(2004), p. 72.

- 2001년 국세청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개인유사법인 중점관리』 지침에서 ‘개인유사법인’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으로 파악되며, 국세청은 개인유사법인의 세금탈루 소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여 당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음
-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인유사법인 용어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
- 개인유사법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같은 규모 업종의 개인사업자보다 신고소득 및 세 부담률이 낮으며, 특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신고소득률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 개인유사법인의 대표자는 개인 돈과 법인 돈을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함
  -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유사법인은 개인사업자와 같이 매출액 축소 혐의가 많음
  - 세무조사 등 세무 간섭이 적은 점을 이용하여 법인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존재함
-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로는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일반법인보다 더 적으며,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 또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유보소득 배당간주과세제도가 2020년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류되어 시행되지 않음(4.유보소득 과세제도(안) 참고)
-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을 말함<sup>48)</sup>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sup>49)</sup>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47) 국세청,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개인유사법인 중점관리」, 2001. 2. 16.

48)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3항, 4항

49)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소유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금액 합계가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함)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됨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과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상 비용 한도가 일반법인보다 적음
  - 업무용승용차 손금 인정범위를 적용할 때 “1,500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함<sup>50)</sup>

50)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5항

〈표 II-4〉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의 업무용승용차 세무상 비용 한도

구분	일반법인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
운행기록 미작성 시 손금인정한도 및 업무사용비율 계산 (영 §50의2 ⑦)	1,500만원	500만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한도 (영 §50의2 ⑩, ⑪)	800만원	400만원
처분손실 손금산입한도 (영 §50의2 ⑬)	800만원	400만원

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제10항, 제11항, 제13항, 제15항

-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의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sup>51)</sup>

〈표 II-5〉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상 비용 한도

구분	일반법인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
기본한도	1천 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원) $\times$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times \frac{1}{12}$	일반법인의 50%
수입금액별 한도	일반수입금액 $\times$ 적용률 <sup>1)</sup> + 특수관계수입금액 $\times$ 적용률 <sup>1)</sup> $\times$ 10%	

주: 1)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1만분의 30(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 1만분의 20(0.2%), 500억원 초과인 경우 1만분의 3(0.03%)을 적용함

자료: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및 제5항

- 또한,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2018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sup>52)</sup>

51)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52) 「법인세법」 제60조의2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된 제도임<sup>53)</sup>
    -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후 개인사업자가 해당 제도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다수 목격됨<sup>54)</sup>
  - 이후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기준금액이 점차 인하되면서 개인사업자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가 제도 대상에 포함됨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임<sup>55)</sup>
- 성실신고확인 대상법인은 세액공제 등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혜택을 부여받으나,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 세무조사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음<sup>56)</sup>
- 성실신고확인 대상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됨(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자관할 세무서장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성실신고확인 대상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는 150만원으로 함<sup>57)</sup>

53)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검색일자: 2023. 6. 27.

54) 이덕희·박종국·홍영은(2019), p. 35.

55) 기획재정부, 「2017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017. 8. 2.,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sessionId=kKK-JzfkSDJ1nefKeOoz8uPP.node40?atchFileId=ATCH\\_00000000005836&fileSn=4](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sessionId=kKK-JzfkSDJ1nefKeOoz8uPP.node40?atchFileId=ATCH_00000000005836&fileSn=4), 검색일자: 2023. 6. 28.

56)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2&cntntsId=7748>, 검색일자: 2023. 6. 28.

57)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 제1항

- 성실신고확인 대상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함<sup>58)</sup>
-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음

#### 4. 유보소득 과세제도(안)<sup>59)</sup>

- 2020년 기획재정부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음
  - 특정 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려는 제도였으며,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유보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음
  - 제도 도입 취지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밝힘<sup>60)</sup>
  -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후 대안 반영 폐기됨

58) 「법인세법」 제75조

59) 의안정보시스템, 「[2103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M2G0T0Y8Y3Q1H1J4T3E4K0P8S6D8S0](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M2G0T0Y8Y3Q1H1J4T3E4K0P8S6D8S0), 검색일자: 2023. 6. 16.

60) 기획재정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보도자료, 2020. 11. 4.,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52209&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52209&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검색일자: 2023. 6. 16.

- 적용대상 법인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임
  -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은 사실상 그 주주 등이 법인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다르지 않은 개인유사법인으로 볼 수 있음
  -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로 하였으며, 법률에서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음
  
- 초과유보소득은 배당가능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을 의미함
  -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유보는 사유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인정함
  
- 다만,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 사업 법인의 경우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투자·부채상환·고용·R&D 지출 적립금액은 과세 대상 유보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
  - 적극적 사업법인은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및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채권 등의 처분수입이 전체수입의 일정 수준(예: 50%) 미만인 법인을 말함 - 부동산 임대료 수입만 임대업 법인 등 수동적 수입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법인 또는 경영활동을 위한 지출(투자·부채상환·고용·R&D) 없는 법인은 적극적 사업법인이 아닌 법인임
  - 일시적으로 사업이 위축되어 수동적 수입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에만 적극적 사업법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 초과유보소득 중 주주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먼저 과세하며,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먼저 과세한 소득을 제외하여 중복과세를 조정함
  - 주주 간주배당금액 = 초과유보소득(유보소득 - 적정유보소득) × 지분비율

- 간주배당 지급시기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으로, 대상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 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해야 함
  
- 그러나 특정 내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제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특수관계자 범위 및 유보소득 계산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던 사항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경제상황을 포함하여 유보소득 과세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대안 폐기 결정되었음

### Ⅲ. 조사대상국의 개인사업자와 법인 과세제도

#### 1. 미국

##### 가. 기업 형태별 과세체계

- 미국 연방세법에서는 기업 형태를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s),<sup>61)</sup> 파트너십 (Partnership), 법인(Corporation)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체를 혼자서 소유한 사람을 의미함<sup>62)</sup>
  - 파트너십이란 2인 이상이 이윤을 목적으로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함<sup>63)</sup>
    - 단순히 비용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파트너십으로 간주하지 않음
    - 법인과 달리 파트너십은 법적 문서 없이 존재할 수 있으나 파트너십의 소득, 손실, 공제 등의 배분 기준을 사전에 약정할 필요가 있음
    - 배분비율에 대한 사전 약정이 없는 경우 파트너십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율이 결정됨
  - 법인은 개인과 구분되는 법적 실체를 의미하며, 연방소득세 목적상 C법인과 S법인이 있음

---

61) IRS에 따르면, 자영업자(self-employed)는 혼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사업(business)을 운영하는 사람임. 자영업자에는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뿐만 아니라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깃 노동자(gig worker), 파트너십의 구성원(member of a partnership)을 포함함

62) IRS, "Sole Proprietorship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ole-proprietorships>, 검색일자: 2023. 5. 24.

63)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p. 628.; IRC §761(a)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법인으로 과세함<sup>64)</sup>

- 법인 또는 정치단체로서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 합자회사(joint-stock company) 또는 합자조합(joint-stock association)으로서 주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 보험회사, 특정 은행, 주 또는 지방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사업체, 내국세입법에 따라 법인으로 과세하도록 특별히 요구되는 사업체(예: 특정 상장 파트너십), 특정 외국기업, 법인으로의 과세를 선택한 기타 모든 사업체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재무부 규정<sup>65)</sup>에 따라 연방 소득세 목적상 파트너십 또는 법인으로 분류될 수 있음
- 법인 중 S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S법인을 선택할 수 있음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적용역법인(Personal Service Corporation)에 해당함
  - 테스트 기간<sup>66)</sup> 주요 활동은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며, 인적용역에는 회계, 보험계리, 건축, 컨설팅, 공학, 보건(수의학 포함), 법률 및 공연 예술 분야에서 수행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됨
  - 종업원인 소유주(employee-owner)가 해당 인적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테스트 기간 인적용역 수행 활동에 대한 회사 보상 비용의 20% 이상이 종업원인 소유주가 수행한 인적용역에 대한 것이어야 함
  - 종업원인 소유주가 테스트 기간 마지막 날 발행주식 공정시장가치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 S법인은 연방세 과세목적으로 법인의 소득, 손실, 공제 및 세액공제를 주주에게 전달하기로 선택한 법인을 의미함<sup>67)</sup>

64) IRS, Publication 542, "Corporations," 2022, pp. 2~3.

65) Treas. Reg §301.7701-3

66) 일반적으로 모든 과세연도의 테스트 기간은 이전 과세연도이고 신설법인의 테스트 기간은 과세연도의 첫날에 시작하여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 또는 과세연도가 시작되는 역년의 마지막 날 중 빠른 날에 끝남

67) IRS, "S Corporation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corporations>, 검색일자: 2023. 6. 22.

- S법인의 주주는 개인의 세금신고서에 법인에서 이전된 소득과 손실을 보고하고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
    - 이를 통해 S법인은 법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음
  - S법인은 법인 단계에서 내재이익 및 수동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음
  - S법인의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내법인일 것
    - 개인, 특정 신탁 및 유산재단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파트너십, 법인 또는 비거주 외국인은 주주가 될 수 없음
    - 주주가 100명 이하일 것
    - 한 종류의 주식만 보유할 것
    - 부적격 법인(예: 특정 금융기관, 보험회사 및 국내 해외판매법인)이 아닐 것
  - S법인이 되려면 모든 주주가 서명한 서류(Form 2553, Election by a Small Business Corporation)를 제출해야 함
- 연방소득세는 기업 형태에 따라 개인소득세, 파트너십 과세, 법인소득세를 적용함
- 개인사업자는 개인소득세 제도, 파트너십과 S법인은 파트너십 과세제도, C법인은 법인소득세 제도를 적용함
  - 파트너십은 납세주체가 아니고 실질적인 납세의무는 파트너십의 파트너에게 있음<sup>68)</sup>
    - 즉, 파트너십은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아니고 주주에게 수익을 분배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 파트너가 자신에게 분배된 파트너십의 소득, 양도이익, 손실 및 공제 등을 개인소득 혹은 법인소득으로 신고함
    - 파트너십은 납세의무는 없지만, 소득산정을 위하여 과세연도와 회계방식을 선택하고 소득 배분에 대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음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는 주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적 실체이지만, LLC의 선택과 구성원의 수에 따라 법인, 파트너십, 소유자 개인

68)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p. 643.

으로 취급됨<sup>69)</sup>

- 최소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LLC는 법인으로의 과세를 선택하지 않는 한 연방소득세 목적상 파트너십으로 분류됨
- 구성원이 1인인 LLC는 법인으로의 과세를 선택하지 않는 한 소유자와 별개로 간주하지 않고 소유주 개인의 소득세 신고서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함<sup>70)</sup>
  - 그러나 고용세 및 특정 소비세(excise tax) 목적으로는 개인과 분리된 법적 실체로 간주함
- 현재 미국법에서는 파트너십에 대해 check-box rule에 의해 법인과 파트너십 중 어느 형태로 과세할지 선택할 수 있고,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한 경우 파트너십의 소득은 파트너의 소득으로 과세함
- 주주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지 않고 법인을 통해 얻은 소득을 출자자에게 바로 과세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sup>71), 72)</sup>

## 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과세 차이

- 미국 과세체계상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소득세 과세대상인 법인(C Corporation)<sup>73)</sup>의 과세제도를 과세소득 범위, 세무상 비용 인정 기준, 세율 및 이익의 분배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비교함

69) IRS, "Single 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ingle-member-limited-liability-companies>, 검색일자: 2023. 8. 9.

70) IRS, "Tax Guide for Small Business for use in preparing 2022 Return," 2023, p. 3.

71) 이창희, 『세법강의』, 2021, pp. 573~575.

72) 미국에서 처음으로 법인을 주주와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보았던 1913년 당시에는 누진세의 회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격을 투시하여 과세하였음

73) 미국의 경우 C법인과 S법인의 두 가지 법인 형태가 존재하지만, S법인의 경우 법인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법인의 이익과 손실을 주주(소유자)에게 분배하여 주주 단계에서 소득세로 과세하므로, 이하에서 '법인'이란 C법인을 의미함

### 1) 과세소득 범위

-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체를 혼자 소유한 사람으로,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자산 및 부채를 모두 소유하고 개인사업체로부터의 소득과 손실은 개인소득세로 신고함<sup>74)</sup>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의 첨부자료인 Schedule C(Profit or Loss from Business)를 통해 신고함
  
- 개인사업자의 사업에서 발생한 총소득(gross income from business)은 매출에서 판매된 재화의 비용을 차감하고 투자소득과 다른 원천에서의 소득을 가산한 소득을 의미함<sup>75)</sup>
  - 법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한 사업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총소득에 포함되며 소득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sup>76)</sup>
    - 자산 또는 서비스의 교환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개인자산 임대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 개인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비용(인건비, 이자비용, 로열티, 외주용역비, 수선유지비 등)을 공제할 수 있음
  
- 법인의 과세소득은 총소득(Gross Income, GI)에서 각종 공제항목(Deduction)을 차감한 금액임<sup>77)</sup>
  - 법인의 총소득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Gross Profit)에 배당, 이자, 임대료, 로열티, 자본이득 및 기타 이익을 가산하여 산출함

74) IRS, "Sole Proprietorship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ole-proprietorships>, 검색일자: 2023. 6. 7.

75) IRC §61(1)(2); Treas. Reg §1.61-3(a)

76) IRS, "Tax Guide for Small Business for use in preparing 2022 Return," 2023, pp. 20~22.

77) 박훈, 『미국세법』, 2016, p. 266.

- 공제항목은 임원 보상, 급여 및 임금, 대손금, 세금, 이자, 자선기부금, 감가상각비, 종업원급부제도(employee benefit program), 결혼금, 배당금공제 등임

## 2) 세무상 비용 인정 기준

- 무역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과세연도 동안 지불했거나 발생한 모든 일상적이고 필요한 비용(ordinary and necessary)은 세무상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음<sup>78)</sup>
- 사업비용의 공제에 관한 규칙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됨<sup>79)</sup>

### 가) 업무용 차량비용

- 업무용 차량비용에 대한 규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됨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사업에서 차량(car)이나 트럭(truck)을 사용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비용은 기준거리비율(standard milage rate) 또는 실제 비용(actual expense)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함<sup>80)</sup>
- 기준거리비율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일당 58.5센트이며,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마일당 62.5센트임<sup>81)</sup>
  - 소유한 차량 또는 트럭에 기준거리비율을 사용하려면, 업무에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첫해에 이를 선택하여야 함
  - 리스차량에 기준거리비율을 사용하는 경우 전체 리스기간에 적용함
  - 기준거리비율법을 사용하면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지보수 및 수리비, 휘발유(휘발유세 포함), 보험 또는 차량등록비와 같은 실제사용비용은 공제할 수 없음

78) IRC §162(a)

79) IRS, Publication 542, "Corporations," 2022, p. 9.

80) IRS, "Tax Guide for Small Business for use in preparing 2022 Return," 2023, pp. 31~32.

81) IRS, "Travel, Gift, and Car Expenses for use in preparing 2022 Returns," Pub 463, pp. 14~15.

- 기준거리비율법을 적용하는 경우라도 사업에 사용된 부분에만 자동차 할부 이자, 재산세, 주차비와 통행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동시에 5대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sup>82)</sup>은 기준거리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 기준거리비율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실제 비용을 공제함<sup>83)</sup>
  - 실제비용에는 감가상각비, 리스료, 차량등록비, 주차장임대료,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주차비, 통행료, 기타 자동차 수리비가 포함됨
  - 자동차 할부이자<sup>84)</sup>는 직원 소유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고, 법인소유 및 개인사업자 본인 소유이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된 부분에만 공제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차량을 업무 및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와 개인용으로 구분하여 목적별 주행거리에 따라 비용을 구분하여 업무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음<sup>84)</sup>
- 연간 20,000마일을 운행하였고 업무용으로 12,000마일, 개인용으로 8,000마일을 사용한 경우, 사업비로 자동차 운용비용의 60%(12,000 ÷ 20,000)만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음
- 직원이 개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 사적 사용한 총 마일에 기준거리비율을 곱하여 개인 용도로 직원에게 제공한 차량의 가치를 결정한 금액<sup>85)</sup>은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거나 직원이 상환하여야 함<sup>86)</sup>

82) 정액법 외의 방법으로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 공제를 청구한 경우, 수정가속상각법(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을 적용한 경우, 자동차에 대한 섹션 179공제를 청구한 경우, 자동차에 대한 특별감가상각(special depreciation allowance)을 청구한 경우, 1997년 이후 리스한 자동차에 대해 실비로 공제를 청구한 경우 기준거리비율법을 사용할 수 없음

83) IRS, "Travel, Gift, and Car Expenses for use in preparing 2022 Returns," Pub 463, p. 15.

84) IRS, "Tax Guide for Small Business for use in preparing 2022 Return, 2023," p. 32.

85)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기준거리비율, 통근거리 및 임대가치를 기준으로 상황에 적용함

86) IRS, "Employer's Tax Guide to Fringe Benefits For use in 2023," 2023, p. 25.

- 고용주 소유의 자동차를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직원의 과세소득의 일부로 간주함<sup>87)</sup>
  - 업무용과 개인용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은 직원이 100%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 고가자동차에 대한 규정이나 대표자의 사적 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나) 접대비

- 접대비에 관한 규정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됨
- 일반적으로 오락, 유흥<sup>88)</sup> 또는 레크리에이션으로 간주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음<sup>89)</sup>
- 음식이나 음료가 호화롭거나 사치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영업자 본인 또는 직원이 참석하는 사업용 식사 비용의 50%는 공제 가능함
  -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음식 및 음료이고 2020년 12월 31일 이후 및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지불했거나 발생한 경우 식사 비용의 100%를 공제할 수 있음

#### 다) 대표자 인건비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주가 사업체에서 받은 금액(급여 및 기타 복리후생적 지출)에 대해 사업비 공제를 청구할 수 없음<sup>90)</sup>

87) IRS, "Employer Provided Vehicles," <https://www.irsvideos.gov/Business/FilingPayingTaxes/EmployerProvidedVehicles>, 검색일자: 2023. 8. 9.

88) 유흥(amusement)으로 간주하는 활동에는 나이트클럽, 사교·운동 및 스포츠클럽, 극장, 스포츠 행사, 요트에서의 손님 접대, 또는 사냥, 낚시, 휴가 및 이와 유사한 여행이 포함됨. 접대에는 식사, 호텔 스위트 룸 또는 자동차를 고객이나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개인의 개인적, 생활적 또는 가족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음

89) IRS, "Travel, Gift, and Car Expenses for use in preparing 2022 Return," 2023, p. 10.

90) Wolters Kluwer, "Understanding the tax consequences of compensation," <https://www.wolterskluwer.com/en/expert-insights/understanding-the-tax-consequences-of-compensation>, 검색일자: 2023. 6. 27.

- 사업체의 순이익은 인출하든 기업계좌에 입금하든 상관없이 모두 사업주에게 과세소득임
  - 물론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
-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에게 지불하는 급여, 임금, 커미션, 보너스 및 기타 보상(compensation)은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음<sup>91)</sup>
- 비용으로 공제하기 위한 요건은 일상적이고 필요한 비용으로서 적정한 금액이며 실제로 제공된 용역에 대한 지불이고 공제를 청구하는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불했거나 발생한 것이어야 함<sup>92)</sup>
  - 일반적으로 적정한 보상은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기업이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함<sup>93)</sup>
  - 임직원에게 대한 상여금은 직원이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에 합당한 수준에만 공제 가능한 비용에 해당함<sup>94)</sup>
  - 대부분의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비현금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금액은 양도된 재산의 공정시장가치임
- 보상의 적정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주로 소규모기업이나 가족소유기업(family-owned business)의 주주인 임원(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상에 대해 적용됨<sup>95), 96)</sup>

91) Wolters Kluwer, “Understanding the tax consequences of compensation,” <https://www.wolterskluwer.com/en/expert-insights/understanding-the-tax-consequences-of-compensation>, 검색일자: 2023. 6. 27.

92) IRC §162(a)(1)

93) Treas. Reg 1.162-7(b)(3)

94) Treas. Reg 1.162-9

95) Wolters Kluwer, “Understanding the tax consequences of compensation,” <https://www.wolterskluwer.com/en/expert-insights/understanding-the-tax-consequences-of-compensation>, 검색일자: 2023. 6. 27.; 홍범교·박수진·김효림(2022), p. 42.

96) IRS는 보상의 적정성 판단과 관련하여 피고용인이 고용주에 대한 통제력이 있거나(대주주인 경우) 소유주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소규모 가족소유기업은 이러한 상황에 해당함

- 보상의 형태로 지급되지만 실제로 인적용역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인건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형식적으로 급여이지만 주식에 대한 배당이며 주주가 급여를 받은 회사에서 발생함<sup>97)</sup>
  - 급여가 유사한 업무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고 그 초과지급액이 임원의 주식보유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이익의 분배에 해당함
- 과도한 직원보수를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 공개법인의 최고경영자와 가장 높은 보상을 받는 4명<sup>98)</sup>의 임원 보수에 대해 100만 달러의 공제한도를 적용함<sup>99)</sup>
  - 부실자산구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사의 고용주(최고경영자 또는 최고 재무책임자)의 보수는 50만 달러의 공제한도를 적용함<sup>100)</sup>
  - 특정 건강보험회사의 임원, 이사 및 직원의 보수는 50만 달러의 공제한도를 적용함<sup>101)</sup>
  - 계약에 따라 경영진에게 지불하는 낙하산지급액(parachute payment)은 특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sup>102)</sup>
    - 낙하산지급액이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증권법 등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부적격 개인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불을 의미함<sup>103)</sup>
    - 공제한도는 과거 5년간 부적격 개인의 연평균 과세대상 보수의 3배임<sup>104)</sup>
    - 낙하산지급액이 실제 제공된 용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97) Treas. Reg 1.162-7(b)(1)

98) 1994년 1월 1일 해당 규정이 시작되었을 당시에는 임원 5명까지 적용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임원 4명으로 적용 범위를 개정함

99) IRC §162(m)(1)~(3), Reg. §1.162-27(c)(2)

100) IRC §162(m)(5)

101) IRC §162(m)(6)

102) IRC §280G(a)~(b)

103) 부적격 개인은 독립계약자 또는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임원, 주주 및 보수가 높은 개인임. 보수가 높은 개인이란 직원 중 최고 급여를 받는 1% 또는 그 미만인 경우 최고 급여를 받은 250명 직으로 구성된 그룹의 구성원을 의미함

104) 홍법교·박수진·김효립(2022), p. 47.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함<sup>105)</sup>

- 소규모법인(small business corporation)이고 주주의 75%가 낙하산 지급액을 승인한 경우 적용 배제함<sup>106)</sup>

#### 라) 자금인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와 사업체의 법적 구분이 없고 모든 사업소득은 개인 소득세의 신고대상임<sup>107)</sup>
  - 소유주는 사업수익을 100% 소유하고 모든 손실과 부채에 대해서 100% 책임이 있음
  - 소유주가 사업체로부터 인출하는 것은 공제 가능한 사업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상 영향이 없음
- 법인의 경우, 법인의 주주 또는 소유자(owner)가 급여와 배당 외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자본금의 상환과 법인으로부터의 대여금이 있을 수 있음
- 법인의 소유자인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출하는 경우 회사의 연말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개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과세함<sup>108)</sup>
  - 대출을 이용하여 다음의 자산을 구매할 경우 1년 한도의 예외가 적용되며, 미리 정해진 이율로 이자가 부과됨

---

105) IRC §280G(b)(4)

106) IRC §280G(b)(5)

107) Rosenberg Chesnov, "Taking Money Out of Your Business: What Owners Need to Know," <https://rcmycpa.com/taking-money-out-of-your-business-what-owners-need-to-know/>, 검색일자: 2023. 8. 10.

108) Upcounsel, "Borrowing Money From Your Own Corporation," <https://www.upcounsel.com/borrowing-money-from-your-own-corporation>, 검색일자: 2023. 8. 10.

- 개인이 사용하는 집, 회사의 주식, 업무용 차량 등
- 대출은 주주로서가 아닌 고용의 일부로 제공되어야 함
  - 즉, 다른 비주주 직원도 동일한 유형의 대출이 가능하여야 함
- 국세청은 주주 대출이 있는 경우, 임금이나 배당금을 위장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할 수 있음
  - 만일 회사의 1인 주주의 대출이라면 국세청은 유효한 대출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감사를 통해 배당금으로 재분류할 수 있음
- 국세청으로부터 대출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문서화하고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연방 요율로 이자를 설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약속어음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함

### 3) 세율

-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10~37%의 누진적 소득세율로 과세되나 법인사업자는 소득세율보다 낮은 21%의 단일세율로 과세됨
- 개인소득세율은 10~37%의 7단계 누진세율 구조임
- 법인세율은 21%의 단일세율임

〈표 III-1〉 미국 소득세율(2023년)

(단위: 달러)

세율	과세표준			
	독신	세대주	부부합산신고	부부별도신고
10%	0~11,000	0~15,700	0~22,000	0~11,000
12%	11,001~44,725	15,701~59,850	22,001~89,450	11,001~44,725
22%	44,726~95,375	59,851~95,350	89,451~190,750	44,726~95,375
24%	95,376~182,100	95,351~182,100	190,751~364,200	95,376~182,100
32%	182,101~231,250	182,101~231,250	364,201~462,500	182,101~231,250
35%	231,251~578,125	231,251~578,100	462,501~693,750	231,251~346,875
37%	578,126 이상	578,101 이상	693,751 이상	346,876 이상

자료: 2022~2023 tax brackets and federal income tax rates

#### 4) 이익의 분배

- 이익의 분배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점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기업(C법인)의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점임
  -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용을 차감한 이익은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사업자의 개인소득에 해당하고 개인소득세로 과세가 종료되므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음
  - 법인의 경우 비용을 차감한 이익은 법인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세후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된 후 주주 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함
    - 다만, S법인은 선택에 의해 파트너십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법인 단계에서의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과 비용이 주주에게 이전되어 개인 주주 단계에서 과세하므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음
  
- 법인 또는 개인 주주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조정 방법은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sup>109)</sup>
  - 개인주주인 경우, 일반 소득세율(10~37%)보다 낮은 0%, 15%, 20%의 세율로 과세 하여 일반소득에 비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함
    - 적용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독신인 경우 0~41,675달러는 0%, 41,676~459,750달러는 15%, 459,751달러 이상은 20%임<sup>110)</sup>
  - 법인주주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의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함
    - 배당받은 법인이 배당하는 법인의 지분율 20% 미만 소유한 경우 배당금의 50%, 20% 이상 소유한 경우 배당금의 65%, 80% 이상인 경우 배당금의 100%를 공제할 수 있음

109) 전병목·송은주·서동연, 『주요국의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 연구』, pp. 41~45.

110) 과세표준은 2022 과세연도 기준 금액임

## 다.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 미국은 개인유사법인과 개념이 유사한 인적지주회사(Personal Holding Company, PHC)와 폐쇄회사(Closely Held Corporation)에 대한 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 1) 인적지주회사 과세제도<sup>111)</sup>

- 인적지주회사 과세제도는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분배되지 않고 이자 등 법인의 수동적 소득을 확대하는 데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34년 도입되었음
- 법인(C법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인적지주회사에 대하여 유보된 인적지주회사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인적지주회사세(PHC tax)를 부과함
- 인적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목적으로 설립된 C법인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을 의미하며<sup>112)</sup>, 법인이 인적지주회사로 운영되려면 소득요건과 지분요건을 충족하여야 함<sup>113)</sup>
  - (소득요건) 과세연도의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 중 60% 이상이 인적지주회사 소득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 인적지주회사 소득은 배당금, 이자, 로열티, 연금, 임대료, 광물·석유·가스 로열티, 저작권 사용료, 제작된 영화 대여, 주주의 회사재산 사용에 대한 보상, 인적용 역 계약 금액, 부동산 및 신탁으로부터의 소득 등을 의미함

111) IRS, "Instructions for Schedule PH (Form 1120) (12/2016)," <https://www.irs.gov/instructions/i1120sph>, 검색일자: 2023. 8. 14.

AICPA & CIMA, "Beware the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https://www.thetaxadviser.com/issues/2020/jul/beware-personal-holding-company-tax.html>, 검색일자: 2023. 6. 15.

112) UPcounsel, "Personal Holding Company: Everything You Need to Know," <https://www.upcounsel.com/personal-holding-company>, 검색일자: 2023. 6. 14.

113) IRC 542

- (지분요건) 과세연도의 후반기 동안 5인 이하의 개인이 회사 주식 가치의 50%를 초과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지분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 상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법인은 인적지주회사가 될 수 없음
  - 면세법인, 금융기관, 생명보험 및 보증회사, 1958년 중소기업투자법에 따라 운영되는 특정중소기업투자회사, 파산중인 법인, 외국기업
- 인적지주회사제는 유보이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인적지주회사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과세됨<sup>114)</sup>
- 한편, 일반법인에 과세하는 유보이익세는 사업상 합리적 필요 이상의 유보에만 과세함
  - 인적지주회사제 적용 시 유보이익세는 적용되지 않음

## 2) 폐쇄회사 과세제도

- 폐쇄회사(Closely Held Corporation)란 과세연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최대 5인 이하의 개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으로 인적용역법인(Personal Service Corporation)이 아닌 법인임<sup>115)</sup>
- 폐쇄회사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공개기업임
  - 비공개기업은 C법인, S법인, 파트너십(LLC)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함
  - 회사 주식을 대부분 소수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이기도 한 관리자는 사업 운영에 관한 모든 결정에 통제권을 지닌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 지

114) AICPA & CIMA, "Beware the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https://www.thetaxadviser.com/issues/2020/jul/beware-personal-holding-company-tax.html>, 검색일자: 2023. 6. 15.

115) IRS, "Corporations," 2022, Pub 542, p. 3.; Investopedia, "Closely Held Corporation: Definition, Types, and Examples," <https://www.investopedia.com/terms/c/closely-held-corporation.asp>, 검색일자: 2023. 6. 9.; Legal Zoom, "Pros and cons of a closely held corporation," <https://www.legalzoom.com/articles/pros-and-cons-of-a-closely-held-corporation>, 검색일자: 2023. 6. 9.

분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주주의 자본 납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 폐쇄회사에 대해서는 ① 수동손실 제한규정(passive activity limitation rules)과 ② 손실에 관한 위험부담규정(at-risk rules)이 적용되고 ③ 주주(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비용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이 있음<sup>116)</sup>
- 수동손실 제한규정이란 일반적으로 수동활동으로 인한 손실의 공제는 수동활동 소득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sup>117)</sup>
  - 수동활동이란 과세연도 동안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무역 또는 비즈니스 활동과 모든 임대활동임
  - 수동손실 제한규정의 목적은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업활동이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임대활동을 통하여 손실을 발생시켜 다른 원천의 소득과 상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는 데 있음<sup>118)</sup>
  - 수동손실 제한규정은 C법인인 폐쇄회사와 인적용역법인, 개인(파트너와 S법인의 주주 포함), 유산재단(Estate), 신탁(Trust)에 적용됨
- 손실에 관한 위험부담규정이란 사업 및 소득창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해당 활동에 대한 본인의 위험부담액(At-risk amount)을 상한으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함<sup>119)</sup>
  - 위험부담액에는 해당 활동에 납입한 현금과 자산의 장부가액, 해당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채 중 납세자 본인에게 상환책임이 있는 금액(상환청구권 부채)임
  - 위험부담규정의 목적은 납세자가 해당 활동에 대한 실제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시도를 방지하는 데 있음

116) IRS, "Frequently Asked Question," <https://www.irs.gov/faqs/small-business-self-employed-other-business/entities/entities-5>, 검색일자: 2023. 6. 9.

117) IRS, "Corporations," Pub 542, 2022, p. 15.

118) 박훈, 『미국세법』, 2016, p. 105.

119) IRS, "Corporations," Pub 542, p. 14~15.; 박훈, 『미국세법』, 2016, p. 104.

- 위험부담규정은 C법인인 폐쇄회사, 개인(파트너, S법인의 주주 포함), 유산재단(Estate), 신탁(Trust)에 적용됨<sup>120)</sup>
  
- 미국 국세청(IRS)은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상 금액에 관여하지 않지만 폐쇄회사의 주주(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compensation)는 비과세 수단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기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용인지 고려하고 있음<sup>121)</sup>
- 모든 거래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한 보상은 “실제로 제공된 개인 서비스에 대한 급여 또는 기타 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수당(reasonable allowance)<sup>122)</sup>”으로 규정하고 있음
- 폐쇄기업의 주주에게 제공되는 보수의 합리성을 결정할 때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sup>123)</sup>
  -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제3자가 보상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 주주를 고용한 회사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만 제공되는지
  - 주주가 보유한 직위에 대한 보상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근 검토가 수행되었는지
  - 보상이 주주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

120) IRS, “Passive Activity and At-Risk Rules For use in preparing 2022 Returns,” Pub 925, p. 13.

121) PYA, “Closely Held Corporation Shareholder Compensation—Are You Too Close for Comfort?,” <https://www.pyapc.com/insights/closely-held-corporations-compensation/>, 검색일자: 2023. 6. 15.

122) IRC §162(a)(1)

123) 국세청이 폐쇄기업을 감사하는 경우, 너무 높은 보상은 보상의 일부를 부적적으로 간주하거나 위장된 배당금으로 분류할 수 있고, 너무 낮은 보상은 급여세 및 실업세 계산의 과소평가로 판단될 위험이 있음

## 라. 유보이익 과세제도

-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급격히 인하함으로써<sup>124)</sup> 세율 관점에서 법인 형태의 기업 운영이 더욱 유리해졌고, 정부는 부당하게 누적수익의 피신처로 법인 형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보이익세(Accumulated earning tax, AET)제도를 시행하고 있음<sup>125)</sup>
  - 유보이익세와 인적지주회사세는 모두 연간 20%의 세금이 부과되나, 유보이익세는 특정 요건 없이 모든 법인에 적용되고 인적지주회사세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만 적용되는 차이가 있음
  
- 법인은 이익을 전액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할 수 있는데, 사내에 유보하는 이익이 비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보이익세를 부과함<sup>126)</sup>
  - 기본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내부에 유보하기보다는 배당을 지급할 것을 권장함
  - 이익을 유보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 세 부담 면에서 자본이득세가 배당소득세보다 낮기 때문에 이익을 유보하는 것은 주주에게 유리하지만 정부의 세수는 감소하게 됨
  - 유보이익세를 과세함으로써 회사에 직접 과세하거나 배당을 유도하여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음
  
- 유보이익세의 목적은 기업이 주주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상 합리적 필요 이상으로 이익을 내부에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sup>127)</sup>

124) 미국은 감세 및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 PL 115-97)으로 알려진 법률에서 기업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였고 동시에 개인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은 37%로 인하하였음

125) AICPA & CIMA, "Beware the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https://www.thetaxadviser.com/issues/2020/jul/beware-personal-holding-company-tax.html>, 검색일자: 2023. 6. 15.

126) Investopedia, "Accumulated Earnings Tax Definition and Exemptions," <https://www.investopedia.com/terms/a/accumulatedearningstax.asp>, 검색일자: 2023. 6. 13.

127) IRS, "Part 4. Examining Process Chapter 10. Examination of Returns Section 13. Certain Technical Issues," [https://www.irs.gov/irm/part4/irm\\_04-010-013](https://www.irs.gov/irm/part4/irm_04-010-013), 검색일자: 2023. 6. 13.

- 유보이익세의 납부 의무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에 의해 발생함
  - 법인은 합리적 필요성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이익(earnings and profits)을 유보해야 함
  - 이익을 분배하는 대신 유보함으로써 주주의 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법인 측의 의도가 있어야 함
-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
  - 주주에 대한 대출 및 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법인 자금 지출을 포함하여 법인과 주주 간의 거래
  - 유보이익(미배당이익)의 투자가 회사의 사업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
  - 회사 배당 내역
- 사업상 합리적 필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사업 확장 또는 설비 교체
  - 주식 또는 자산 매입을 통한 기업 인수
  -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소각할 목적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거래 및 사업과 관련한 부채 소각
  - 사업에 필요한 운전자본
  - 공급업체 및 고객에 대한 투자 또는 대출
  - 상기에 언급한 사업상의 요구 외에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로는 소액주주 보유 주식의 환매, 기업 간 경쟁,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 고용주를 위한 연금 및 이익공유제도(profit sharing plan)를 위한 자금조달 등이 있음
- 유보이익세의 적용대상은 법인의 주주 수와 관계없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sup>128)</sup>
  - 인적지주회사, 과세 면제되는 법인,<sup>129)</sup> 수동적 외국인투자회사(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128) IRC §532

129) IRC Subchapter F에 의해 과세 면제되는 법인을 말함

- 유보이익 과세표준은 일정 항목에 대하여 조정된 과세소득에서 지불된 배당금 공제 (Dividend paid Deduction)의 합계와 유보이익공제(accumulated earnings credit)를 차감하여 산출함<sup>130)</sup>
  - 과세소득에서 조정되는 항목으로는 연방소득세 및 초과이윤세 등의 세금, 자선 기부금, 일반적인 자본손실, 세후순자본이익은 공제되나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결손금은 공제되지 않음
    - 다만, 순수 지주회사나 투자회사는 조정항목에 차이가 있음
  - 지불된 배당금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에 지급된 배당금, 간주배당, 인적지주회사(PHC)의 경우 이월 배당액을 포함한 금액임<sup>131)</sup>
  - 일반적인 법인의 유보이익공제액은 25만달러임
    - 의료, 법률, 공학, 건축, 회계, 계리학, 공연 예술 또는 컨설팅 분야의 서비스 수행이 주요 기능인 법인의 경우 유보이익공제액은 15만달러임
  
- 유보이익세의 세율은 20%임
  - 유보이익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 하여야 함

## 2. 일본

### 가. 기업 형태별 과세체계

- 일본의 기업 형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 조합,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서 등기를 하지 않고 출자자인 사업주가 경영하는 기업 형태를 의미함

---

130) IRC §535

131) IRC §561

- 참고로 2021년 기준 일본 개인사업자는 기업 전체 수의 4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 관련 서비스업, 오락업 및 숙박업, 음식서비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sup>132)</sup>
- 조합에는 「민법」상 조합, 익명조합, 유한책임사업조합,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이 있으며, 조합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음
- 일본 회사법상 회사는 모두 법인이며,<sup>133)</sup> 회사 종류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합동회사가 있음<sup>134)</sup>
  - 2021년 기준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가 전체회사의 91.2%를 차지하고 있음<sup>135)</sup>
  - 2006년 5월까지 「유한회사법」에 따른 유한회사 설립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유한회사법」이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설립은 불가하며, 2006년 5월 이전에 설립한 유한회사는 특수 유한회사(TKY) 형태로 존속 가능함
- 일본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사법상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인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고,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에서 직접 과세를 하는 구성원 과세를 채택하고 있음<sup>136)</sup>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짐
- 조합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세무상 도관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직접 과세함<sup>137)</sup>
  - 조합 과세 관련 규정은 법령으로 명문화되지 않고 「소득세법 기본통달」 36-37 공동 19-21, 「법인세법 기본통달」 14-1-3에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귀속시기, 계산방법 및 분배비율 등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음

132) 일본 총무성 통계국(総務省統計局), 「個人企業の経営実態」, <https://www.stat.go.jp/info/today/pdf/191.pdf>, 검색일자: 2023. 7. 24.

133) 「일본 회사법」 제3조

134) 「일본 회사법」 제6조

135) 일본 국세청, 『会社標本調査』, 2023. p. 14.

136) 勝野 成紀(2011), p. 1.

137) 흥법교·정훈·홍성희(2017), pp. 63~65.

- 일본의 회사법상 회사는 모두 법인이므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짐

## 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과세 차이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과세제도 차이를 과세소득 범위, 세무상 비용 인정 기준, 세율, 이익의 분배로 구분하여 차이를 비교하기로 함

### 1) 과세소득 범위

- 개인사업자의 과세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함<sup>138)</sup>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에 ① 농업, ② 임업 및 수렵업, ③ 어업 및 수산양식업, ④ 광업(토석 채취업 포함), ⑤ 건설업, ⑥ 제조업, ⑦ 도매업 및 소매업(음식점업 및 요리점업 포함), ⑧ 금융업 및 보험업, ⑨ 부동산업, ⑩ 운수통신업(창고업 포함), ⑪ 의료보건업, 저술업 및 기타 서비스업, ⑫ 이외 대가를 얻고 계속 수행하는 사업이 열거되어 있음<sup>139)</sup>
- 법인의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모든 소득이 포함됨<sup>140)</sup>
  - 다만, 내국법인 중 공익법인 등 및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138) 「일본 소득세법」 제27조

139)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140) 「일본 법인세법」 제5조

## 2) 세무상 비용 인정 기준

### 가) 업무용 차량비용

- 일본의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업무용 차량비용을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손금 및 필요 경비 개념에 부합하도록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차량비용에 대한 규정은 「소득세법」 제37조 필요경비에 대한 정의 및 동법 제45조 가사경비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따름
  - 「소득세법」 제37조: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관련된 매출원가, 기타 해당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 판매관리비, 일반관리비 및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함
  - 「소득세법」 제45조: 개인사업자의 가사상의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있어야함<sup>141)</sup>
  -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으로는 감가상각비<sup>142)</sup>, 리스료, 유지비(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차량검사료, 보험료, 자동차세 등) 등 차량에 관련된 비용임
  -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은 차량의 사용거리에 따라 안분하거나 사용 빈도수를 기록된 내용 등을 토대로 적용하여야 함
  - 업무와 가사상의 사용 구분이 애매한 경우, 일반적으로 관련 비용의 50%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실무상 의견이 있음

141) 濱田會計事務所, 「Q40【経費の範囲は?】個人名義の車両はどこまで経費?個人と法人の違い/仕訳 按分方法」, 2022. 1. 28., <https://www.mikagecpa.com/archives/3241/>, 검색일자: 2023. 7. 20.

142) 일본은 세법상 자동차에 대해 6년의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음

- 법인 역시 업무용 차량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와 무관하여 사용된 비율은 손금 불산입으로 처리하며 차량을 사용한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봄
  - 「법인세법」 제22조 제3항: 내국법인 각 사업 연도의 소득의 금액의 계산상 그 사업연도의 손금의 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법에서 달리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매출원가,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자본 거래 이외의 거래로 인한 손실임
  -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 명의가 법인에 있거나, 법인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함
  - 일본 국세불복재판소 판례에서는 임원의 아내가 법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전속 사용한 경우, 임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공여에 해당하며, 그 경제적 이익의 금액은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보험료, 대출에 관한 지급이자 중 그 이용 월 수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sup>143)</sup>

#### 나) 접대비(교제비)

-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접대비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면 한도 없이 필요경비 인정됨<sup>144)</sup>
  - 「소득세법」 제37조 필요경비 개념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지출 목적이 분명하며,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함
  - 단, 「소득세법」에 접대비의 한도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 시 사업의 규모나 거래의 횟수를 따져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인되는 사례가 많음
- 법인의 경우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 인정이 안 됨<sup>145)</sup>

143) 国税不服審判所, 「平成24年11月1日裁決」, <https://www.kfs.go.jp/service/JP/89/12/index.html>, 검색일자: 2023. 8. 14.

144) MONEYIZM, 「個人事業主の交際費の考え方を詳しく解説! 法人の交際費とどう違う?」, <https://www.all-senmonka.jp/moneyizm/9682/>, 검색일자: 2023. 7. 20.

- 일본에서는 접대비를 교제비라 칭하며, 교제비란 접대비, 기밀비 및 그 외의 비용으로 회사 거래처, 구입처 그 외 사업과 관계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접대, 위안, 선물의 제공,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해서 지출하는 것을 말함
  - 접대비 성격 지출액이지만, 다음의 항목은 세무상 접대비로 보지 않음
    - 전적으로 직원의 복지를 위한 운동회, 연예회, 여행 등을 위한 비용
    - 음식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1인당 지출액이 5,000엔 이하이며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경우
    - 기타 선물비용
      - 달력, 수첩, 부채, 수건 등 그 밖의 물품을 선물하기 위한 통상의 비용
      - 회의와 관련하여 다과, 도시락 등 이와 유사한 음식물을 공여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
      -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 또는 방송 프로그램을 편집하기 위해 행해지는 간담회 및 그 외 기사 수집, 방송을 위한 취재를 위해 필요한 비용
- 그러나 2014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대규모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접대음식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sup>146)</sup>
- 접대음식비란 접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음식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장부에 의해 일정 내용이 기록되어 증명된 것을 말함
    - 음식비와 관련된 음식 등이 있던 연월일
    - 음식비에 관련된 음식 등에 참가한 고객, 공급업체 기타 사업과 관계가 있는 사람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그 관계
    - 음식비의 액수 및 그 음식점, 요리점 등의 명칭
    - 음식비임을 증명하기 위한 기타 필요한 사항

145) 국세청, 「No.5265 交際費等の範圍と損金不算入額の計算」,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265.htm>, 검색일자: 2023. 7. 20.

146) 「조세특별조치법」 제61조의4; 일본 국세청, 「交際費等の損金不算入制度の改正のあらまし」,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hojin/kousaihi.pdf>, 검색일자: 2023. 7. 20.

- 자본금 1억엔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① 접대음식비의 50% 상당액과 ② 정액 공제액(8백만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음
  - 접대음식비 상당액이 1,6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① 접대음식비 50% 한도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1,600만엔 미만인 경우 ② 정액공제액 800만엔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
- 자본금이 100억엔을 초과하는 대법인은 적용대상이 아님<sup>147)</sup>

#### 다) 대표자 인건비

- 개인사업자의 경우 급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사업소득이 개인사업자 본인의 근로소득과 같은 개념임
- 개인사업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그 외 친족(이하 가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불산입되나, 요건을 만족한 경우 실제 지급액(청색신고자) 또는 일정액(백색신고자)에 한해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음<sup>148)</sup>
  -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 직원이란 개인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며, 원칙적으로 과세연도 중 6개월 이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에만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배우자 및 15세 이상 그 외 친족 직원을 말함
  - 개인사업자가 청색신고자인 경우 가족 직원에게 지급한 실제 급여 지급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sup>149)</sup>

147) 1인당 접대음식비가 5,000엔 이하인 경우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지 않고, 회의비로 간주되기에 손금산입이 가능함

148) 「일본 소득세법」 제 57조; 국제청, 「No.2075 青色事業専従者給与と事業専従者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075.htm#a-2>, 검색일자: 2023. 7. 20.

149) 일본에서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할 때 청색신고 또는 백색신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청색신고는 일정 수준의 장부기장 수준을 유지하고 해당 장부를 바탕으로 정확한 신고를 하는 자가 소득계산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세무서의 사전승인을 요하며, 이러한 혜택 중 하나가 가족직원에게 대한 실제 급여 지급액 전액 공제임(청색사업전종자공제). 참고로 백색신고는 청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근무시간, 업무의 성격, 가족 직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급여, 다른 사업에서의 급여, 납세자의 수익성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액 필요경비 인정됨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면 신청서 「청색사업 전종자 급여에 관한 신고서(青色事業専従者給与に関する届出書)」는 과세연도의 3월 15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가 백색신고자인 경우 다음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 ① 해당 가족 직원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86만엔, 그 외의 경우에는 50만엔
- ② 사업소득금액을 가족 직원 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금액

□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임원급여로 취급되며, 일본에서 임원급여는 ① 정기동액급여, ② 사전확정급여, ③ 일정 요건을 만족한 실적연동급여만이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음<sup>150)</sup>

- ① 정기동액급여란 그 지급 시기가 매일, 매주, 매월과 같이 1월 이하의 기간마다 미리 정해진 지급 기준(관습 포함)에 따라 계속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sup>151)</sup>
- ② 사전확정급여란 임원의 직무 제공의 대가로 소정의 시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의 금전, 약정된 주식 등을 말함<sup>152)</sup>
  - 해당 급여와 관련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액이 손금불산입 됨
- ③ 일정요건을 만족한 실적연동급여란 해당 근무 사업연도의 이익, 주식 시장가격, 매출액에 관한 지표에 기초한 금전의 금액 또는 주식 등을 말함

□ 또한, 상기 요건을 충족한 급여일지라도 다른 임원과 비교하여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높게 지급하는 급여는 손금 불산입됨<sup>153)</sup>

150) 「일본 법인세법」 제34조

151) 「일본 법인세법」-법령해석통달 9-2-12

152) 「일본 법인세법」-법령해석통달 9-2-14

153) 「일본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액이 임원의 직무내용, 법인의 수익, 유사법인 상황 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지급되는 금액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 등 결의로 정하는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이 손금 불산입됨<sup>154)</sup>
- 또한, 임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부당하게 높게 지급된 금액은 손금불산입 됨<sup>155)</sup>
  - 급여 계산 시 채무 면제에 의한 이익, 그 외의 경제적인 이익을 포함함
  - 특수관계 있는 직원은 임원의 친족, 사실혼 관계가 있는 자, 임원으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고있는 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의미함<sup>156)</sup>

#### 라) 자금인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금 인출에 제한이 없으며, 세무상 제재도 없음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경우 실무상 인출금(引出金) 또는 사업주 계정(事業主貸 事業主借)으로 처리한 후 자본금에서 상계함<sup>157), 158)</sup>
  - 우리나라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유사한 규정은 일본 세법에서 발견되지 않음
-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며, 대표자(또는 임원)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적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함<sup>159)</sup>

154)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155) 「일본 법인세법」 제36조

156)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157)フリーウェイ, 「引出金とは~個人事業主が店舗や会社のお金を個人的に使う場合~」, <https://freeway-keiri.com/blog/view/404>, 검색일자: 2023. 7. 19.

158) 風間税務会計事務, 「事業主貸 事業主借(事業主勘定)の仕訳の仕方を教えてください」, <http://www.kojin-taxoffice.jp/category/2005419.html>, 검색일자: 2023. 7. 19.

159) 税理士法人新日本, 「役員と会社の金銭貸借での税務調査」, <http://www.bestzeirishi.jp/14493042627674>, 검색일자: 2023. 7. 19.

-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통상적으로 수취해야 할 이자액과의 차액만큼 수익으로 계상한 후 임원의 급여 또는 상여로 처리하여야 함
- 실제 이자를 수취하지 못했음에도, 대여금에 대한 적정한 이자를 수취한 후 임원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의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급여 등)을 준 것처럼 세무 처리함
- 회사는 적정한 이자와의 차액을 임원의 급여 소득에 추가하여 해당 금액이 다른 임원들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지 판단하며, 통상 임원의 급여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참고로, 적정이율은 회사가 제3자로부터 차입하고 대출한 경우에는 그 차입이자율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대출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해에 고시된 이율(2022년 중에 실시된 대출의 경우 0.9% 적용)임<sup>160)</sup>
- 우리나라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유사한 규정은 일본 세법에서 발견되지 않음

### 3) 세율

-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5%에서 45%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음<sup>161)</sup>

〈표 Ⅲ-2〉 일본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195만엔 이하	5%
195만엔 초과 333만엔 이하	10%
333만엔 초과 695만엔 이하	20%

160) 일본 국세청, 「No.2606 金銭を貸し付けたとき」,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606.htm>, 검색일자:2023. 7. 19.

161) 「일본 소득세법」 제89조

〈표 III-2〉의 계속

과세표준 구간	세율
695만엔 초과 9백만엔 이하	23%
9백만엔 초과 1천 8백만엔 이하	33%
1천 8백만엔 초과 4천만엔 이하	40%
4천만엔 초과	45%

자료: 「일본 소득세법」 제89조

- 법인 기본세율은 23.2%이나, 자본금 1억엔 미만의 중소기업 등은 과세표준이 800만엔 미만의 경우 15%(19%) 경감세율을 적용함<sup>162)</sup>
- 자본금 1억엔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연 800만엔 미만의 경우 15%를 경감세율을 적용받음
- 단, 2019년 4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 전 직전 3년 이내 종료한 각 사업연도의 평균 소득금액이 15억엔이 넘는 법인의 경우 연 800만엔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19% 세율이 적용됨

〈표 III-3〉 일본 법인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일반법인	자본금 1억엔 이하의 법인 등 <sup>1)</sup>	연 800만엔 이하	하기 이외의 법인	15%
			적용 제외 사업자 <sup>2)</sup>	19%
		연 800만엔 초과		23.2%
		상기 이외의 일반법인		23.2%

주: 1)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있어 자본금 또는 출자금 액수가 1억엔 이하인 회사를 말하며, 대법인과 완전 지배관계가 있는 회사 등은 제외됨

2) 해당 사업연도 전 직전 3년 이내 종료한 각 사업연도의 평균 소득금액이 15억엔이 넘는 법인의 경우를 말함

자료: 일본 국세청, 「No.5759 法人税の税率」,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759.htm>, 검색일자: 2023. 7. 11.

162) 「일본 법인세법」 제66조: 일본 국세청, 「No.5759 法人税の税率」,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759.htm>, 검색일자: 2023. 7. 11.

#### 4) 이익의 분배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담한 뒤 별도의 과정 없이 세후 소득에 대한 귀속주체가 되나, 법인은 출자자와 별개의 소득 귀속주체로 일차적인 법인세를 부담하며 해당 세후 이익을 배당 등의 절차를 통해 출자자에게 분배함
- 법인의 세후 이익이 배당 등을 통해 출자자에게 분배될 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
- 일본의 경우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 배당공제, 법인인 경우 수취배당의 익금불산입제도를 통해 조정하고 있음
  - 주주가 개인인 경우 배당공제금액은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천만엔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금액의 10%, 1천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 중 종합소득금액으로부터 1천만엔을 초과한 금액(A)의 5%와 배당소득금액 중 (A) 이외의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임<sup>163)</sup>
    -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말하며,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에 관련된 배당소득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절반임(개인의 과세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천만엔 미만인 경우 5%이며, 1천만엔 초과인 경우 2.5%를 적용함)
  - 배당을 받은 주주가 법인인 경우 수취배당의 익금불산입제도를 통해 조정하고 있음

163) 일본 국세청, 「No.1250 配当所得があるとき(配当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250.htm>, 검색일자: 2023. 7. 19.

## 다.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 일본은 우리나라의 개인유사법인과 개념이 유사한 동족회사에 대해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일본의 동족회사는 소수의 일정 주주 일가가 법인을 지배하는 회사로, 주요 주주의 독단에 의해 사업이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조세회피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상 특별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 특별규정으로는 ① 행위계산부인 규정, ② 세무상 임원 간주 규정, ③ 유보소득 과세제도가 있음
    - ③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경우 특정동족회사를 대상으로 함
  
- 동족회사란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자를 하나의 주주그룹으로 보았을 때 3개 이하의 주주그룹이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또는 의결권)의 50%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함<sup>164)</sup>
  -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함
  - 다음의 개인은 주주와의 특수관계자로 주주그룹에 포함하여 계산함<sup>165)</sup>
    - 주주 등의 친족(배우자 및 6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
    - 주주 등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주주 등(개인주주에 한함)의 사용인
    - 주주 등의 사용인 이외의 사람으로 주주 등으로부터 받는 금전, 그 외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주주 등의 사용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이들의 친족
  - 다음의 법인은 주주와의 특수관계자로 주주그룹에 포함하여 계산함<sup>166)</sup>
    - 동족회사인지 여부를 판정하려고 하는 회사의 주주 등의 1명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해당 다른 회사

164) 「일본 법인세법」 제2조 제10호

165)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166)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판정회사 주주 등의 1인 및 상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다른 회사
- 판정회사 주주 등의 1명 및 상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다른 회사

### 1) 행위계산부인 규정

- 동족회사에 대한 행위계산부인 규정이란 동족회사의 행위 또는 계산이 법인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경우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이나 결손금액 또는 법인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제도임<sup>167)</sup>
- 일본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동족회사를 대상으로 한 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음<sup>168)</sup>
- 법령에서 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거래유형을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동족회사와의 거래 시 시가보다 적은 수입을 계상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인식한 거래가 주로 경정의 대상이 되었음<sup>169)</sup>

### 2) 세무상 임원 간주 규정

- 동족회사의 직원이 회사법상 임원이 아니더라도 동족회사를 판정하는 주주그룹에 포함되어 일정 주식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 세무상 임원으로 간주하여 법인 임원에 대한 급여 규정을 적용받음<sup>170), 171)</sup>

167) 「일본 법인세법」 제132조

168) 홍범교·이형민·유지선(2011), p. 92.

169) 国税不服審判所, 「同族会社の行為又は計算の否認」, [https://www.kfs.go.jp/img/common/h\\_logo.gif](https://www.kfs.go.jp/img/common/h_logo.gif), 검색일자: 2023. 8. 11.

170) 「일본 법인세법」 제34조 제6항

171) 일본 국세청, 「No.5205 役員のうち使用人兼務役員になれない人」,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205.htm>, 검색일자: 2023. 7. 21.

- 동족회사의 직원 중 주식소유비율에 의해 판정한 결과,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 경우 세무상 임원으로 간주함<sup>172)</sup>
  - 직원이 속한 주주그룹을 포함하여, 3개 이하 주주그룹의 주식소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직원이 속하는 주주그룹의 소유비율이 10%를 초과함
  - 그 직원(배우자 및 50% 관계회사 포함)의 소유비율이 5%를 초과함
- 따라서, 일정 형식을 갖춘 급여만이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으며,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높게 지급하는 급여는 손금불산입 됨
- 일본의 임원 급여는 ① 정기동액급여, ② 사전확정급여 ③ 실적연동급여만이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음(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과세제도 비교 중 다) 대표자 인건비 내용 참고)

#### 라. 유보소득 과세제도

- 특정 동족회사를 대상으로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특정 동족회사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1923년 미나미 배당과세제도 창설을 시작으로 1950년 지연이자과세제도, 1961년 부당유보과세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기본구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적용대상 회사 범위가 축소되고 유보공제액이 인상되었음<sup>173)</sup>
- 특정 동족회사란 최대 주주 1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그 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회사 등을 말함
  - 유보소득 과세가 적용되는 법인은 원래 동족회사(3인 이하의 주주 등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이었으나, 2006년부터 특정 동족회사

172)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173) 四元秀伸(2022), pp. 15~16.

(최대 주주 1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로 개정된 바 있음<sup>174)</sup>

- 또한, 법인의 자본금이 1억엔 이하의 경우 적용배제 되나, 법인이 대법인(자본금 5억엔 이상)의 100% 자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포함됨
- 최대 주주 1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 최대주주그룹)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동족회사에 해당함<sup>175)</sup>
  - 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분 제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회사의 의결권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의 사원의 총수 절반의 수를 차지하는 경우
- 최대주주그룹에 포함되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은 다음을 말함<sup>176)</sup>
  - 최대주주 등의 친족(배우자 및 6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
  - 최대주주 등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최대주주 등(개인주주에 한함)의 사용인
  - 3호 이외의 사람으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받는 금전, 그 외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전 3호에 내거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이들의 친족
- 최대주주그룹에 포함되는 주주 등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그 지배회사 법인(피지배회사)을 최대주주그룹에 포함함<sup>177)</sup>
  - 최대주주그룹에 피지배회사가 아닌 법인주주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 법인주주를 제외하여 다시 피지배회사 여부를 판정함

□ 유보소득에 대한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sup>178)</sup>

$$\text{유보소득세액} = [\text{사업연도 소득 등} - (\text{사외유출} + \text{법인세 등}) - \text{유보공제액}] \times \text{특별세율}$$

174) 일본 국세청, 「税額の計算に関する改正」,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hojin/kaisei/2006/06.pdf>, 검색일자: 2023. 7. 13.

175) 「일본 법인세법」 제 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의7 5항

176) 「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의7 1항

17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의7 2항

178) 「일본 법인세법」 제67조

- “사업연도 소득 등(所得等の金額)”은 ①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② 수취 배당 등의 익금불산입액, ③ 외국 자회사로 받는 배당 익금불산입액, ④ 자산수증 이익 익금불산입액, ⑤ 환부금 등의 익금불산입액, ⑥ 결손금(재해손실, 회사 갱생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의한 결손금) 손금산입액은 가산하고, ⑦ 중간신고 시 재해 손실결손금액 환급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은 차감하여 계산함
- 사외유출과 관련하여서는 잉여금의 배당, 이익의 배당, 금전의 분배 등 결의일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까지 이뤄진 경우 사업연도 소득 등에서 차감됨
- 법인세 등 금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뿐만 아니라 지방법인세법에 의한 지방 법인세액,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도부현민세 및 시읍면민세가 포함됨
- 유보공제액은 ① 소득 기준액, ② 정액 기준액, ③ 적립금 기준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함
  - ① 소득 기준액: 소득 등의 금액×40%
  - ② 정액 기준액: 연 2천만엔
  - ③ 적립금 기준액: 기말 자본금의 금액의 25% - 이익적립금액
- 동족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유보금액이 유보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법인세액에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sup>179)</sup>
-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초과유보소득 금액에 따라 10~20%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표 III-4〉 일본 동족회사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세율

초과유보소득 구간	세율
연 3천만엔 이하	10%
연 3천만엔 초과 연 1억엔 이하	15%
연 1억엔 초과	20%

자료: 「일본 법인세법」 제67조 제1항

179) 「일본 법인세법」 제67조 제1항

### 3. 영국

#### 가. 기업 형태별 과세체계

- 영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자(sole trader), 파트너십, 유한 회사(limited company)의 형태에 해당함<sup>180)</sup>
  - 개인사업자는 비교적 설립이 간단한 사업 형태이며, 설립자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자영업자(self-employed)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함
    -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 및 부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업 형태임
    - 기업의 모든 이익이 개인의 소득에 포함되고 이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 부채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지는 형태임
  - 파트너십은 2인 이상의 파트너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가장 간단한 기업 형태이며, 사업 부채에 대한 책임은 파트너들이 분담하게 됨
    - 파트너의 구성에 따라 일반 파트너십과 유한책임파트너십(LLP)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반 파트너십의 구성원은 자영업자이므로 비법인 사업체에 해당하고, 파트너는 조직 운영의 위험, 비용, 혜택을 공유하고 기업의 손실이나 부채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지는 형태임
    - 유한책임파트너십의 구성원은 개인 또는 회사가 될 수 있고 파트너의 책임이 사업에 투자한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파트너십과 유사함
  - 유한회사는 주주가 소유하고 이사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법적 권리와 의무가 개인과 분리된 법인임

180) GOV.UK, "Set up a business," <https://www.gov.uk/set-up-business>, 검색일자: 2023. 7. 11.; Beyond the balance sheet, "What are the different types of business structures in the UK? How to choose one," <https://www.wellersaccountants.co.uk/blog/what-are-the-different-types-of-business-structures-in-the-uk>, 검색일자: 2023. 7. 11.

- 유한회사는 법적 실체로 운영되며, 사업 부채에 대한 책임이 개인과는 별개인 법인에 있고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를 납부한 후 회사가 보유하며, 회사의 이익은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분배됨

- 기업 형태별로 개인사업자는 개인소득세, 유한회사는 법인소득세를 적용하고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의 실체에 따라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소득세 과세체계에 따라 과세함

## 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과세 차이

- 영국의 과세체계상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소득세 과세대상인 유한회사의 과세제도를 과세소득 범위, 세무상 비용 인정 기준, 세율 및 이익의 분배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비교함
  - 유한회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대표적인 기업 형태이므로 이하에서는 유한회사를 ‘법인’이라 함

### 1) 과세소득 범위

-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상거래<sup>181)</sup>, 전문직 용역 및 기타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함<sup>182)</sup>
  - ‘상거래’의 의미는 「소득세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각종 상행위 및 제조활동을 포함하며<sup>183)</sup>, 전문직 용역은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업무를 포괄하

181) 농업 및 원예업은 거래에 해당됨

182) IBFD,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23 June 2023),”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ta/html/ita\\_uk\\_s\\_001.html%23ita\\_uk\\_s\\_1.4](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ta/html/ita_uk_s_001.html%23ita_uk_s_1.4). 검색일자: 2023. 7. 26.,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① 거래, ② 법률, 회계, 의학 등의 전문직, ③ 다이버 또는 다이빙강사, ④ 운하, 어업, 철도 및 교량 등이 포함됨

183) 이는 법인세 목적상의 정의이나 소득세 목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는 것임

- 사업소득은 상업적 목적을 위해 계산된 이익이므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 계산된 이익에서 세제상 금지된 비용을 조정하여 계산됨
  - 주요 조정항목은 감가상각, 재고평가, 준비금 등이 있고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 공제가 금지됨
    - 사업에 사용된 자본 및 자본에 대한 명목이자
    -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거래 목적을 위해 지불된 것이 아닌 금액
    - 불량부채, 추정 악성부채 또는 법정 파산계약의 일부로 면제된 부채를 제외한 부채에 대한 준비금
    - 소유주와 그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는 기타 사적 목적을 위해 지불한 금액
    -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범위를 제외한 주거용 숙박 시설의 임대료
    - 사업장 개선을 위한 지출
    - 접대비 및 선물(직원에 대한 접대, 특정 경품 등은 예외임)
    -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 자산 처분에 의한 자본이득은 별도로 과세함
-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sup>184)</sup>
- 법인세는 소득과 자본이득에서 일정한 경비와 공제 가능한 항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해 과세함
  - 과세대상 소득에는 거래소득, 재산소득, 대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 파생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 무형고정자산 관련 이익, 기술 및 특허권 판매에서 발생하는 이익 및 기타소득이 포함됨<sup>185)</sup>

184) GOV.UK, "Corporation Tax," <https://www.gov.uk/corporation-tax>, 검색일자: 2023. 7. 24., 법인세 과세대상은 유한회사(limited company), 외국회사의 영국지점, 클럽, 협동조합 또는 기타 비법인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임

185) IBFD, "United Kingdom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Corporate Income Tax (Last Reviewed: 15 June 202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a\\_uk\\_s\\_1.&refresh=1690193869662%23gtha\\_uk\\_s\\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a_uk_s_1.&refresh=1690193869662%23gtha_uk_s_1.), 검색일자: 2023. 7. 24.

- 과세소득은 각 소득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계산된 소득에 자본이득을 추가하고 허용 가능한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함

## 2) 세무상 비용 인정 기준<sup>186)</sup>

-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공제 가능한 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거래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지출된 경우 거래 이익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음<sup>187)</sup>
-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용만 공제할 수 있음<sup>188)</sup>
  -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므로 차량, 재택근무, 사업장 거주 비용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방법으로 고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음
  - 간소화된 비용 산출법은 개인사업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은 사용할 수 없음

### 가) 업무용 차량비용

-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사업을 위해 구매하고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를 적용할 수 있음<sup>189)</sup>
- 자본공제 방법은 초년도공제(First Year Allowance), 표준공제(Main Rate Allowance), 특별공제(Special Rate Allowance)가 있음

186) Rossmartin, "Sole trader v. limited company: Key tax & legal differences," <https://www.rossmartin.co.uk/starting-in-business-77750/140-sole-trader-v-limited-company-key-tax-a-legal-differences>, 검색일자: 2023. 7. 21.

187) IBFD, "United Kingdom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Corporate Income Tax (Last Reviewed: 15 June 2023),"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gtha/html/gtha\\_uk\\_s\\_00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gtha/html/gtha_uk_s_001.html), 검색일자: 2023. 7. 25.

188) GOV.UK, "Expenses if you're self-employed," <https://www.gov.uk/expenses-if-youre-self-employed>, 검색일자: 2023. 7. 25.

189) GOV. UK, "Claim capital allowances," <https://www.gov.uk/capital-allowances/business-cars>, 검색일자: 2023. 7. 25.

- 자본공제 비율은 CO<sub>2</sub> 배출량과 차량의 구입날짜에 따라 차이가 있음
- CO<sub>2</sub> 저배출 차량(또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100%)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초년도공제가 적용됨
- CO<sub>2</sub>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18%의 표준공제가 적용되고 CO<sub>2</sub> 배출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6%의 특별공제가 적용됨<sup>190)</sup>

〈표 III-5〉 영국 업무용 차량 자본공제 비율

대상 차량 및 CO <sub>2</sub> 배출량		자본공제 비율	
2021년 4월 이후 구입한 차량	신차, 0g/km(또는 전기차)	초년도공제	100%
	중고전기차	표준공제	18%
	신차 또는 중고차, 50g/km 이하		
	신차 또는 중고차, 50g/km 초과	특별공제	6%
2018년 4월~2021년 3월에 구입	신차, 50g/km 이하 (또는 전기차)	초년도공제	100%
	중고전기차	표준공제	18%
	신차 또는 중고차, 110g/km 이하		
	신차 또는 중고차, 110g/km 초과	특별공제	6%

자료: GOV.UK, "Claim capital allowances," <https://www.gov.uk/capital-allowances/business-cars>, 검색일자: 2023. 7. 25.

- 업무용 차량을 리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배출가스에 따라 리스료의 공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sup>191)</sup>
- CO<sub>2</sub> 배출량이 110g/km를 이하인 차량 또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리스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함

190) 특별공제율은 2012~13 과세연도부터 8%였으나 2019~20 과세연도부터 6%로 인하되었음(이상엽·홍성희·이서현, 『주요국의 감가상각제도 비교연구』, 2020, p. 89)

191) PWC, "2022 Global Automotive Tax Guide," 2022, p. 496.

- 2018년 4월 1일부터는 CO<sub>2</sub> 배출량이 110g/km(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 까지의 기간에 시작된 리스는 130g/k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리스비용의 85%만 공제할 수 있음<sup>192)</sup>
- 업무용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익과 관련하여 발생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목적을 위해서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발생하여야 함<sup>193)</sup>
  - 차량의 사적 사용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제공받는 자의 소득으로 과세함
  - 종업원이 차량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의무 수행과 일시적 근무지로의 출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에만 자본공제를 허용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에 해당하는 차량비용을 간편법(simplified expenses)으로 산출할 수 있음<sup>194)</sup>
  - 예를 들어 보험, 수리, 서비스, 연료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고 운행하는 데 사용된 실제 비용 대신 마일리지에 대한 고정 비율을 사용하여 차량비용을 산출함
    - 간편법에 의한 비용청구는 차량에 대해 이미 감가상각을 청구했거나 사업이익 계산 시 비용으로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 해당되는 차량은 승용차(cars), 승합차(예: vans), 오토바이임
  - 간편법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에 대한 업무용 사용거리를 기록하고 과세연도 말에 업무용 사용거리에 고정비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함

192) 2009년 4월 이전에는 1만 2천파운드를 초과하는 리스료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손금 산입을 제한하였으나, 2009년 4월 이후에는 가격으로 인한 손금산입 제한은 폐지되었고 2009년 4월부터 배출량에 따른 손금산입 제한규정이 도입되었음(이상엽·김태훈·홍성열(2013), p. 36)

193) 이상엽·김태훈·홍성열(2013), pp. 34~35.

194) GOV.UK, "Simplified expenses if you're self-employed," <https://www.gov.uk/simpler-income-tax-simplified-expenses/vehicles->, 검색일자: 2023. 7. 25., 간편법에 의한 비용산출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회사인 파트너가 없는 파트너십에도 적용됨

- (사례) 1년 중 업무용으로 11,000마일을 사용한 경우 청구 가능한 비용은 총 4,750파운드(= 10,000마일×0.45 + 1,000마일×0.25)

〈표 III-6〉 영국 간편법에 차량비용 산출을 위한 마일당 고정비용

차량 유형	마일당 고정비용(펜스)
승용차 및 승합차의 10,000마일 이하	45
승용차 및 승합차의 10,000마일 초과	25
오토바이	24

자료: GOV.UK, "Simplified expenses if you're self-employed," <https://www.gov.uk/simpler-income-tax-simplified-expenses/vehicles->, 검색일자: 2023. 7. 25.

나) 접대비

- 접대비에 관한 비용처리 규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에 차이가 없음<sup>195)</sup>
  - 일반적으로 고객에 대한 업무용 접대 및 선물을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음
  - 직원을 위한 접대비용(staff entertainment)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사업비용임
    - 해당하는 비용에는 음식, 음료, 유흥, 장소 대여, 교통 및 숙박비가 포함되며 사업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함
    - 원칙적으로 직원 접대비용을 포함하여 고용으로 인해 제공되는 혜택의 가치에 대해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을 위한 연례행사 비용으로 연간 1인당 150파운드까지의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됨

195) IBFD, "United Kingdom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Corporate Income Tax (Last Reviewed: 23 March 202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ver/static/cta\\_uk\\_s\\_1.&refresh=1698898691656%23cta\\_uk\\_s\\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ver/static/cta_uk_s_1.&refresh=1698898691656%23cta_uk_s_1.), 검색일자: 2023. 7. 26.; Accountsportal, "Staff and Client Entertainment Expenses: What Can You Claim?," <https://www.accountsportal.com/blog/staff-and-client-entertainment-expenses-what-can-you-claim.>, 검색일자: 2023. 7. 26.

다) 대표자 인건비<sup>196)</sup>

- 개인사업자는 회사의 이익 금액과 관계없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 본인이 직원이 될 수 없으므로 보수로 분류되지 않음
  -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과세목적상 허용되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함
  
- 법인의 직원 또는 이사의 보수(remuneration) 비용은 그가 주주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과세소득 산정 시 공제할 수 있음<sup>197)</sup>
  - 영국의 세법에서는 이사 보수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이사에 대한 보수 역시 일반 직원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 공제가 가능함
    - 이사인 경우에도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이사의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과세목적상 비용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함
  
- 법인의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회사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로 이사 가족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음<sup>198)</sup>
  - 영국 국세청(HMRC)은 소득이 이사로부터 이사보다 낮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가족구성원에게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settlement legislation’ 규정을 두고 있음
    - settlement legislation<sup>199)</sup>이란 개인이 자신의 소득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

196) Rossmartin, “Sole trader v. limited company: Key tax & legal differences,” <https://www.rossmartin.co.uk/starting-in-business-77750/140-sole-trader-v-limited-company-key-tax-a-legal-differences>, 검색일자: 2023. 7. 21.

197) IBFD, “United Kingdom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Corporate Income Tax (Last Reviewed: 23 March 202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uk\\_s\\_1.2.&refresh=1691996597785%23cta\\_uk\\_s\\_1.4.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uk_s_1.2.&refresh=1691996597785%23cta_uk_s_1.4.2.), 검색일자: 2023. 8. 14.

198) Taxinsider, “Paying A Salary To A Family Member,” <https://www.taxinsider.co.uk/paying-a-salary-to-a-family-member>, 검색일자: 2023. 8. 14.

199) ‘settlement’라는 용어는 신탁의 생성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이나 세법에서는 자산의 처분 및 계약 등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됨

거나 소득세를 내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전환하는 방식으로 세금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sup>200)</sup>

- 즉, 개인 간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사의 이익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라 해당 합의한 소득이 여전히 이사 본인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함
- 이익 유지에는 이사의 가족 구성원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도 포함됨
- 이사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공제하려면, 지불한 금액은 수행한 작업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여야 함
  - 수행한 작업이 없거나 수행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비용공제를 부인하고 지불금을 이사에 대한 분배로 처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이사의 배우자에게 연간 하루의 업무에 대해 5만파운드를 지불하였다면, 이는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음

#### 라) 자금인출

-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체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음<sup>201)</sup>
  - 즉, 사업체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서 과세효과가 없고 업무용 계좌에서 자유롭게 대여도 가능함
- 법인의 주주 또는 이사의 가족구성원이 회사로부터 급여, 배당금 및 대여금의 회수 외의 자금을 회사에서 인출하는 것을 대여금으로 보아 이사의 대여금계정(director's loan Account, DLA)<sup>202)</sup>을 통해 관리함<sup>203), 204)</sup>

200) GOV.UK, "TSEM4015 - Settlements legislation: effects of the settlements legislation,"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trusts-settlements-and-estates-manual/tsem4015>, 검색일자: 2023. 8. 14.

201) Rossmartin, "Sole trader v. limited company: Key tax & legal differences," <https://www.rossmartin.co.uk/starting-in-business-77750/140-sole-trader-v-limited-company-key-tax-a-legal-differences>, 검색일자: 2023. 7. 21.

202) Companies Act 2006, S 413에 따라 이사에게 부여한 선급금 및 신용에 관한 세부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이사는 법인으로 부터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줄 수도 있으며, 이사의 대여금계정에는 대여금 및 대여금의 상환을 기록함
- 이사의 대출계정을 사용하여 회사로부터 인출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대출잔액이 1만파운드<sup>205</sup>를 초과하면 국세청은 자동으로 이를 현물급여(Benefit in Kind, BIK)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함<sup>206</sup>
  - 대여금을 받은 자는 자신의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하여야 함
  - 대여금에 대하여 공시이율 이하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불한 이자는 회사 수입에 포함되고 할인된 이자는 현물급여로 처리함

### 3) 세율

-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소득에서 특정 공제 등을 제외한 모든 소득(근로소득 및 투자 소득 포함)에 대해 적용하는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기본세율), 40%(고세율), 45%(추가세율)의 3단계 누진세율 구조임

〈표 III-7〉 영국 개인사업자 소득세율(2023/24년)

(단위: 파운드, %)

세율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2023/24 과세연도) <sup>1)</sup>	종합소득 세율
기본세율	12,571~50,270	20
고세율	50,271~125,140	40
추가세율	125,140 초과	45

주: 1) 기본공제 1만 2,570파운드(2022/23년)까지는 소득세 부과되지 않음. 기본공제는 10만파운드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2파운드당 1파운드씩 감소하여 12만 5,140파운드 초과 시 0이 됨  
 자료: GOV.UK, "Income Tax rates and Personal Allowances," <https://www.gov.uk/income-tax-rates>, 검색일자: 2023. 7. 19.

203) GOV.UK, "Director's loans," <https://www.gov.uk/directors-loans/print>, 검색일자: 2023. 7. 27.

204) Accountancy Partnership, "What Are the Tax Implications of a Director's Loan Account?," <https://www.theaccountancy.co.uk/limited-company/directors/what-are-the-tax-implications-of-a-directors-loan-account-184981.html>, 검색일자: 2023. 8. 17.

205) 2013/14 과세연도는 5,000파운드

206) 회사가 이사에게 이자를 청구한 경우 현물급여로 처리되지 않음

- 법인세율은 2022/23 과세연도까지 19%였으나 2023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기본세율은 25%로 상향 조정되었고, 과세표준이 5만파운드 이하인 회사에 적용하는 19%의 낮은 세율(small profit rate)이 도입되었음<sup>207)</sup>
- 또한 과세표준이 5만파운드에서 25만파운드 사이인 회사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하고 표준한계경감비율(standard marginal relief fraction; 3/200)에 의해 세액을 경감시킴으로써 실효세율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음<sup>208)</sup>
  - 영국 비거주회사, 폐쇄형 투자지주회사(close investment holding company), 이익이 25만파운드를 초과하는 회사는 한계경감을 청구할 수 없음<sup>209)</sup>

〈표 III-8〉 영국 법인세율(2023년 4월 이후)

(단위: 파운드, %)

세율 구간	과세표준	세율
낮은 세율(small profit rate)	50,000 이하	19
기본세율(main rate)	250,000 초과	25

자료: GOV.UK, “Rates for Corporation Tax years starting 1 April,”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corporation-tax/rates-and-allowances-corporation-tax>, 검색일자: 2023. 7. 19.

#### 4) 이익의 분배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사업자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이익의 분배 없이 사업자의 소득세로 과세하나 법인의 사업소득은 법인세 과세 후 분배를 거쳐 주주에게 귀속되어 최종적으로 주주 단계에서 과세함

207) GOV.UK, “Rates for Corporation Tax years starting 1 April,”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corporation-tax/rates-and-allowances-corporation-tax>, 검색일자: 2023. 7. 19.

208) 이익이 100,000파운드인 경우 경감 혜택은 2,250파운드(=(250,000-100,000)×3/200)이며, 실제 법인세 납부액은 22,750파운드(=100,000×25% - 2,250)로 실효세율 22.75%가 됨

209) GOV.UK, “Guidance Marginal Relief for Corporation Tax,” <https://www.gov.uk/guidance/corporation-tax-marginal-relief>, 검색일자: 2023. 8. 15.

-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주주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개인주주인 경우, 배당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함<sup>210)</sup>
    - 배당금 공제액은 2018/19 과세연도부터 2022/23 과세연도까지 2,000파운드였으나, 2023/24 과세연도는 1,000파운드로 감소하였음
  - 법인주주의 경우, 수입배당금을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 후 배당금을 100% 과세 면제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방식임<sup>211)</sup>
    - 대부분의 배당금과 분배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이나<sup>212)</sup> 구체적인 범위는 소규모 법인과 비소규모법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 다.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 영국은 우리나라의 개인유사법인과 개념이 유사한 폐쇄회사(close company)에 대해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sup>213)</sup>
  - 회사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통제될 때, 그들은 이익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있음
    -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사업에 재투자하고 일부를 이사 보수로 가져가고 분배하지 않거나 대출을 통해 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비현금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영국의 민간부분 사업체<sup>214)</sup> 전체 550.8만개 중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직원 수 249명 이하)이 550.1만개로 99.9%를 차지하고 있음<sup>215)</sup>

210) GOV.UK, "Tax on dividends," <https://www.gov.uk/tax-on-dividends>, 검색일자: 2023. 7. 28.

211) 전병목·송은주·서동연(2022), p. 69.

212) 다만 분배로 간주되는 비상업증권 및 특정증권(전환증권 등)에 기초한 이자 및 기타 분배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213) Croner-i, *British Master Tax Guide 2019-20*, 2019, p. 1381.

214) 사업체란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s), 파트너십(partnerships), 법인(companies)을 모두 포함함

- 중소기업 중 종업원이 있는 기업이 140만개, 종업원이 없는 기업이 410만개임
  - 종업원이 없는 기업이란 개인사업자, 관리자만 있는 파트너십, 직원(이사)이 한 명인 법인을 의미함
  - 즉, 전체 사업체 중 74%는 소유주 단독으로 운영되는 기업임

### 1) 폐쇄회사 과세제도

- 폐쇄회사란 영국 거주자이며, 5인 이하의 참여자 또는 이사인 참여자에 의해 통제 되는 회사 또는 청산 시 자산의 절반 이상이 5인 이하의 참여자 또는 이사인 참여자에게 분배될 수 있는 회사임<sup>216)</sup>
  - 참여자란 회사의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지분을 가진 사람으로, 회사의 소득이나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확보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sup>217)</sup>
  - 이사란 직함과 관계없이 이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서, 회사의 보통주 자본금의 최소 20%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이거나 통제 가능한 자임<sup>218)</sup>
  - 통제한다는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현재 또는 미래에 소유하거나 소유할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sup>219)</sup>
    - 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의결권의 절반 이상
    - 회사 수입을 참여자들에게 분배할 때 회사 수입의 절반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의 발행주식
    - 청산 또는 기타 상황에서 참여자들 사이에 분배할 수 있는 회사 자산의 절반 이상에 대한 자격이 있는 모든 권리

---

215) GOV.UK, "Business population estimates for the UK and regions 2022: statistical release,"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business-population-estimates-2022/business-population-estimates-for-the-uk-and-regions-2022-statistical-release-html>, 검색일자: 2023. 8. 15.

216) CTA 2010, s.439, Croner-i, *British Master Tax Guide 2019-20*, 2019, p. 1381~1382.; GOV.UK, "CTM60060 - Close companies: general: broad definition,"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mpany-taxation-manual/ctm60060>, 검색일자: 2023. 7. 18.

217) CTA 2010, s.454

218) CTA 2010, s.452

219) CTA 2010, s.450, Croner-i, *British Master Tax Guide 2019-20*, 2019, p. 1384.

- 폐쇄회사에 대한 특별규정으로는 ① 특정 대여금에 대한 세금 부과, ②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폐쇄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small profits tax rate)의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있음<sup>220)</sup>
- 회사가 통상적인 업무 외적으로 개인인 참여자 및 관계자<sup>221)</sup>에게 대여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9개월이 경과한 경우 회사는 해당 기간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sup>222)</sup>
- 폐쇄회사는 참여자가 회사에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제3자에 대한 부채를 회사에 할당하는 경우, 그 부채 금액을 대출로 취급함<sup>223)</sup>
- 회사가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위해 발생한 부채는 대출로 취급하지 않음
- 세율은 2022년 4월 6일 이후에 이루어진 대여금에 대해서는 33.75%를 적용함
- 2016년 4월 5일까지 제공된 대출 등에 대해서는 25%, 2016/17~2021/22 과세연도는 32.5%의 세율을 적용하였음
- 대여금에 대한 세금은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sup>224)</sup>
- 다만,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받은 회계기간이 종료된 후 9개월 이내에 상환하면 납부한 세금을 환급(relief)받을 수 있음
  - 회사는 대출금을 상환한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환급을 청구해야 함
- 본 규정은 폐쇄회사의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한 대여금이 다음의 요건 모두 해당할 때는 적용되지 않음<sup>225)</sup>

220) Croner-i, "3.12 Close companies," [https://library.croneri.co.uk/cch\\_uk/gts/3-12](https://library.croneri.co.uk/cch_uk/gts/3-12), 검색일자: 2023. 7. 13.

221) 관계자란 참여자의 친척이나 배우자, 참여자 또는 그의 관계자에 의해 만들어진 신탁의 수탁자 등임

222) CTA 2010 s.455(해당 규정은 2010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대출에 적용됨), Croner-i, *British Master Tax Guide 2019-20*, 2019, p. 1385~1386.; GOV.UK, "CTM61505 - Close companies: loans to participators and arrangements conferring benefit on participators: general,"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mpany-taxation-manual/ctm61505>, 검색일자: 2023. 7. 18.

223) Croner-i, *British Master Tax Guide 2019-20*, 2019, p. 1386.

224) Croner-i, *British Master Tax Guide 2019-20*, 2019, p. 1387.; CTA 2010, s.455(3)

225) CTA 2010, s. 456; Croner-i, *British Master Tax Guide 2019-20*, 2019, p. 1386.

- 대여금이 1만 5,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음
  - 대여자가 폐쇄회사 또는 관련 회사(associated company)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없음
    - 대출자 본인 또는 그의 관계자가 보통주 지분의 5% 이상의 수익적 소유자이거나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해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음
  - 대여자가 폐쇄회사 또는 관련 회사의 상시근로자임
- 폐쇄투자지주회사(close investment -holding companies)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 세율 중 낮은 세율(19%)을 적용할 수 없고 기본세율(25%)만 적용함<sup>226), 227)</sup>
- 폐쇄투자지주회사란 회사의 주된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sup>228)</sup>
    - 무역 또는 상업적 거래의 수행
    - 상업적으로 임대하거나 임대할 예정인 토지, 부동산 및 토지 지분에 투자
    - 하나 이상의 적격회사 주식 및 유가증권 보유 또는 대출
    - 둘 이상의 적격회사 관리
  - 기본세율만 적용하므로 저세율과 기본세율 사이에서 법인세율을 경감해주는 표준 한계경감도 적용하지 않음

---

226) CTA 2010. s.34; GOV.UK, "CTM60705 - Close companies: close investment holding companies: introduction,"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mpany-taxation-manual/ctm60705>, 검색일자: 2023. 7. 18.

227) 2023년 4월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 기본세율임

228) Croner-i, "3.12 Close companies," [https://library.croneri.co.uk/cch\\_uk/gts/3-12](https://library.croneri.co.uk/cch_uk/gts/3-12), 검색일자: 2023. 7. 13.

## 4. 독일

### 가. 기업 형태별 과세체계

- 독일에서의 기업 형태는 크게 개인사업자, 인적회사, 물적회사로 구분할 수 있음<sup>229), 230)</sup>
  - 개인사업자(Einzelunternehmen)는 독일에서 가장 간단하고 흔하게 선택되는 기업 형태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자 1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제한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짐
    - 2021년 기준 독일 전체 사업자 유형의 59.2%를 차지함<sup>231)</sup>
  - 인적회사(Personengesellschaft)는 소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민법」상 조합(Gesellschaft), 합명회사(Offene Handelsgesellschaft), 합자회사(Kommanditgesellschaft)가 있음<sup>232)</sup>

229) “회사”라고 번역되는 Gesellschaft는 “특정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률행위에 의해 설립된 사법상의 인적결합”을 뜻하며, 사단과 조합(「민법」상의 조합도 Gesellschaft라고 함)을 모두 포함한 개념임(정순현(2019), p. 15)

230) 독일 정부 창업포털, “Rechtsformen,” <https://www.existenzgruender.de/DE/Gruendung-vorbereiten/Rechtsformen/Auf-einen-Blick/inhalt.html>, 검색일자:2023. 7. 25.

231) 2021년 기준 독일의 사업자 수는 다음과 같음

구분	사업자 수(개)	비중(%)
개인사업자	2,006,591	59
인적회사	411,171	12
물적회사	789,472	23
기타	183,470	5
합계	3,390,704	100

독일 통계청, “Rechtliche Einheiten nach zusammengefassten Rechtsformen,” <https://www.destatis.de/DE/Themen/Branchen-Unternehmen/Unternehmen/Unternehmensregister/Tabellen/unternehmen-rechtsformen-wz08.html>, 검색일자: 2023. 7. 26.

232) 인적회사의 특징으로는 ① 인적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원이 변하지 않는 것이 전제된다. ② 인적회사의 기관구성은 사단과는 달리 자기기관제의 원칙이 타당하여 사원과 기관을 분리하지 않고, 사원이 기관이 된다. ③ 인적회사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만장일치가 요구됨에 따라 모든 구성원에게는 거부권이 주어진다. ④ 인적회사의 재산은 모든 구성원에서 합수적으로 귀속되며, 구성원은 회사의 채무에 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⑤ 인적회사에서는 개별 구성원의 관계가 중요하다. 인적회사의 구성원은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중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정순현(2019), p. 12.

- 이외 파트너십 회사(Partnerschaftsgesellschaft (PartG))는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의 파트너십 형태로 「민법」상 조합 형식을 기반으로 함<sup>233)</sup>
- 물적회사(Kapitalgesellschaft)는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단(Verein)으로<sup>234)</sup>, 주식회사(Aktiengesellschaft, AG), 주식합자회사(Kommanditgesellschaft, KG), 유한회사(Gesellschaft mit begrenzter Haftung, GmbH)가 있음
  - 2021년 기준 독일 전체 상사 회사의 79%는 유한회사임<sup>235)</sup>
  - 2008년 11월부터 미니 유한회사(Unternehmergesellschaft)라는 회사 형태를 도입하여 설립자본 1유로로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sup>236)</sup>
- 독일 회사법에서 법인은 물적회사인 주식회사(AG), 주식합자회사(KG), 유한회사(GmbH)만을 일컫음
  - 독일법에서는 사단=법인=유한책임이라는 논리적 동치관계가 있으며, 무한 책임 사원이 있는 인적회사는 법인격이 없음<sup>237)</sup>
  - 인적회사는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민법」상 법률행위의 주체는 될 수 있음
- 개인사업자는 독일의 거주자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sup>238)</sup>, 법인격이 있는 물적회사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내나, 법인이 아닌 인적회사는 조합과

233) 독일법에서는 전문직은 성질상 상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전문직의 공동기업은 상법상의 회사가 될 수 없고 「민법」상이 조합이 됨. 이창희(2001), p. 47.

234) 사단의 특징으로는 ① 사단은 그 자체가 구성원을 넘어 존재이며, 구성원의 사망 또는 파산에 의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② 사단은 그 조직구조에 특징이 있으며, 구성원 이외의 자가 기관의 지위에서는 제3자 기관제도가 채택되어 있다. ③ 사단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다수결에 의한다. ④ 사단은 법인이며 사단에 속하는 것과 구성원은 분리되어 있다. 사단의 재산은 사단 자신이 소유한다. 구성원은 사단에 대한 지분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고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 구성원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개별 구성원의 상호관계는 사단에서는 희박하다. 정순현(2019), p. 13.

235) 독일 통계청, "Rechtliche Einheiten nach zusammengefassten Rechtsformen im Berichtsjahr 2021," <https://www.destatis.de/DE/Themen/Branchen/Unternehmen/Unternehmen/Unternehmensregister/Tabellen/unternehmen-rechtsformen-wz08.html>, 검색일자: 2023. 7. 26.

236) 미니 유한회사는 매년 순이익의 25%를 반드시 법적 적립금의 설정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적립금과 기존 자본금의 합계가 25,000유로(유한회사 자본금) 이상 되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증자를 결의하고 유한회사로 전환할 수 있음. 과세측면에서는 유한회사(GmbH)와 차이가 없음

237) 이창희(2003), p. 144.

238) 「독일 소득세법(EStG)」 제1조

같은 사원의 집합으로 보아 사원이 제 몫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개인사원인 경우)나 법인세(법인사원인 경우)를 냈<sup>239)</sup>

- 그러나 2021년 6월 25일 「법인세법」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상사 인적회사인 합명 회사와 합자회사에 기업 형태를 변경하지 않고도 법인세 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sup>240)</sup>
- 2021년 12월 3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시작되며, 법인세 과세를 선택하기 위한 신청은 적어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제출되어야 함
- 상사 인적회사가 법인세 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소득세 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며,<sup>241)</sup>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의 주주처럼 처리됨

#### 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과세 차이

- 이하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과세제도 차이를 과세소득 범위, 세무상 비용 인정 기준, 세율, 이익의 분배로 구분하여 비교하기로 함
- 독일 회사법에서 물적회사만이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이하에서는 ‘법인’은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AG), 주식합자회사(KG), 유한회사(GmbH)만을 통칭함
-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계산, 평가, 감가상각 등에 관한 규정들은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과세소득 및 세액 산정 과정에서도 공통으로 적용됨
- 독일의 법인세는 소득세를 보충하는 의미가 있으며<sup>242)</sup>, 법인의 소득 계산은 「법인세법」상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이상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따름<sup>243)</sup>

239) 이창희(2003), pp. 148~149.

240) 독일 연방 국세청, “Option nach § 1a KStG,” [https://www.bzst.de/DE/Unternehmen/EUInternational/Option\\_nach\\_1a\\_KStG/option\\_nach\\_1a\\_kstg\\_node.html](https://www.bzst.de/DE/Unternehmen/EUInternational/Option_nach_1a_KStG/option_nach_1a_kstg_node.html), 검색일자: 2023. 8. 9.

241) 「독일 법인세법(KStG)」 제1a조

242) 김유찬·이유향(2009), p. 123.

243) 「독일 법인세법(KStG)」 제8조

1) 과세소득의 범위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의 범위에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에 인적회사로부터 받는 이익분배금, 또는 영업의 양도로 인한 매각이익, 과거 5년 이내에 물적 회사 지분의 1%를 초과하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도 포함됨<sup>244)</sup>
  - 영업적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영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으려면 그 경제 활동이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소득을 창출한 의도로 수행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함
  - 회사 또는 조합의 사원 또는 지분권자가 합명회사(OHG)나 합자회사(KG) 또는 납세자가 사업자나 공동사업자로 관여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받는 이익분배금(「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영업의 양도나 포기 또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지분의 양도나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 과거 5년 이내 물적 회사에 1%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가 그 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 법인의 경우 법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취급됨<sup>245)</sup>
  - 「법인세법」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법인의 모든 소득이 과세소득으로 포함됨
  - 법인세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소득은 「법인세법」 제8조 1항의 소득에서 동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sup>246)</sup>
  - 소득이 배분되었는지 여부는 소득의 결정에서 중요하지 않음
  
- 법인의 경우 주주와의 거래가 회사법적인 실제관계를 은폐하고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 이용될 때에는 은닉배당으로 보고 법인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지 않고<sup>247)</sup>, 주주의

244) 「독일 소득세법(EStG)」 제15조부터 제17조 및 주요국의 소득세제도(제1권) pp. 306~307.

245) 「독일 법인세법(KStG)」 제8조

246) 「독일 법인세법(KStG)」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자본소득으로 과세함<sup>248)</sup>, 249)

- 은닉배당(verdeckten Gewinnausschüttung)이란 법인의 주주가 회사와의 특수한 관계를 통해 법인의 자산 감소 또는 자산 증가를 방해하는 것을 말함<sup>250)</sup>
- 은닉배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거래 행위가 「민법」상 효력이 있는 적법한 거래에 근거한 것인지, 정상거래인지, 외부 제3자와의 거래 유무 여부를 따짐
  - 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할 때는 은닉배당이 아님
  - 동일한 조건으로 외부 제3자와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 은닉배당이 존재하는 것으로 봄
  - 거래 자체로는 「민법」상 유효하나, 거래 조건이 제3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은닉배당으로 봄
- 아래의 예시 등이 은닉배당 사례에 포함됨
  - 주주 및 관리이사가 부적절하게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
  - 주주가 무상 또는 저리로 회사로부터 낮은 대출을 받는 경우
  -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상환 가능성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법인이 주주의 개인 가정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주주가 법인의 제품을 무상으로 가져오는 경우(법인은 관련 비용을 특별비용으로 손금 처리한 경우)

247) 「독일 법인세법(KStG)」 제8조 제3항 제2절

248)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문장2

249) Haufe, “Verdeckte Gewinnausschüttung (vGA),” <https://www.haufe.de/thema/verdeckte-gewinnausschuettung/>, 검색일자: 2023. 8. 18.

250) 「독일 법인세지침(KStR)」 제8.5조 제1항

## 2) 세무상 비용 인정 기준

### 가) 업무용 차량비용<sup>251)</sup>

-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차량을 일정 범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 (Geschäftswagen)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업무 사용 정도에 따라 사업용 차량 해당 여부가 결정됨
    - 차량을 업무에 50% 이상 사용할 경우 필수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됨
    - 차량을 업무에 10% 이상 50% 미만 사용할 경우 사업자 선택에 따라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차량을 업무에 10% 미만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사적) 자산으로 분류됨
  - 인적회사의 사원에게 제공되는 회사명의 차량 역시 업무 사용 정도에 따라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가 결정됨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됨
  - 사적 사용 비용은 개별 소득 유형뿐만 아니라 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sup>252)</sup>
  - 사적 사용 부분을 산정하는 방식은 사업용 자산 분류에 따라 다름
    - 필수 사업용 자산(차량을 업무에 50% 이상 사용): 1%법<sup>253)</sup> 또는 주행일지법<sup>254)</sup>

251) HK Hamburg, "Geschäfts- bzw. Firmenwagen," <https://www.ihk.de/hamburg/produktmarken/beratung-service/recht-und-steuern/steuerrecht/ertragsteuer-lohnsteuer/einkommensteuer-lohnsteuer/geschaeftswagen-firmenwagen-1167768#titleInText5>, 검색일자: 2023. 8. 3.

252) 「독일 소득세법(EStG)」 제12조 제1항

253) 1%법은 동종 ① 동종 신종차량의 시세조건표상 가액 총액의 1%, ② 동종 신종차량 시세조건표상 가액 총액×0.03%×집과 사무실까지의 편도 통근거리, ③ 동종 신종차량 시세조건표상 가액 총액×0.002%×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 집이 있는 경우 그 집까지 거리를 합산한 금액임

254) 주행일지(logbook)법은 전체 주행거리를 업무 관련 운행과 개인용무 관련 운행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여, 업무 관련 부분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업무 관련 운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일시 및 업무 주행의 시작 및 종료 시의 주행계기표, ② 여행목적지 및 여행경로, ③ 여행목적 및 방문상담자 등의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 선택 사업용 자산(차량을 업무에 10~50% 사용): 주행일지법

- 법인의 경우 회사의 종업원이나 유한회사의 경영자에게 제공되는 회사 명의의 차량은 100% 업무용 자산(Dienstwagen)으로 분류되며, 업무용 차량의 운행과 유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처리됨
- 단, 법인의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적 사용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법인 차량을 제공받는 자의 소득으로 봄
  - 사적 사용분을 산정하는 방식은 1%법 또는 주행일지법 모두 인정함
    - 1%법을 선택한 경우 산정되는 금액을 매달 근로소득세 과세소득에 포함하며, 주행일지법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에는 1년 동안 집계하여 과세소득에 포함함
  - 법인의 차량이 고용관계나 임대계약 없이 주주에 의해 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은닉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음<sup>255)</sup>

#### 나) 접대비

- 접대비(Bewirtungsbeleg)는 업무상 접대를 위한 경비로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접대비의 경우 해당 금액의 70%까지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함<sup>256)</sup>
- 접대비 지출액이 일반 여론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지출임을 접대비 증빙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 다) 대표자 인건비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의 귀속주체이며, 급여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255) HAUFE, "GmbH-Gesellschafter nutzt einen Firmenwagen," [https://www.haufe.de/finance/steuern-finanzen/verdeckte-gewinnausschuettung-nutzung-eines-firmenwagens\\_190\\_600460.html](https://www.haufe.de/finance/steuern-finanzen/verdeckte-gewinnausschuettung-nutzung-eines-firmenwagens_190_600460.html), 검색일자: 2023. 8. 18.

256) 「독일 소득세법(EStG)」 제4조 제5항 제2호

- 개인사업자가 급여 성격으로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한 거래는 자본금 또는 사업 소득의 인출로 처리됨
- 법인의 경우 주주이자 대표자에 대한 보수는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통상적인 범위까지의 액수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나,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은닉배당으로 봄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주주 겸 임원(Gesellschafter-Geschäftsführer)의 급여는 고용계약에 근거한 통상적인 범위까지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음<sup>257)</sup>
    - 주주 겸 임원의 급여 등은 「민법」 제611조에 따른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실제 직무 수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손금 공제가 허용됨
  - 주주인 임원에게 적절한 급여 외에 특별한 판매성과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 수익에 연동된 판매성과 보수는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은 전체 수입의 25%를 넘거나 당기순이익의 50%를 넘는 경우 은닉배당으로 간주한 판례가 있음<sup>258)</sup>
  - 주주이자 대표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도 은닉배당으로 간주한 판례가 있음

라) 자금인출

-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보다 더 큰 자금을 외부로 인출할 경우 초과인출액의 6%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부분이 필요경비(또는 손금) 불산입됨<sup>259)</sup>
  - 초과인출액이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과 예금을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을 말하며, 계산 시 전체기간 누적인출액을 기준으로 함<sup>260)</sup>
  - 당해 사업연도 이익에는 사업체 매각 및 포기로 인한 이익도 포함됨
  - 필요경비(또는 손금) 불산입 금액은 누적 인출금액에 6%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57) 홍범교·박수진·김효립(2022), pp. 72~77.

258) 김유찬·이유향(2009), p. 140.

259) 「독일 소득세법(EStG)」 제4조 제4a항; Betrieblicher Schuldzinsenabzug nach § 4 Absatz 4a EStG BMF vom 2. 11. 2018 ( BStBl I S. 1207) IV C 6 - S 2144/07/10001 :007 - 2018/0223681

260) 인출은 주주와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함. BFH vom 29. März 2007, BStBl 2008 II S. 420

실제 발생 이자금액에서 2,050유로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임

- 대표자 대여금과 관련하여 법인이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거나 대여금의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은닉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음

### 3) 세율

-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은 15% 단일 세율이며<sup>261)</sup> 이에 연대할증료 5.5%가 추가되어 과세됨
- 개인사업자는 영업소득에 대해 소득 구간별로 0%, 14%, 23.97%, 42%, 45% 누진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됨
  - 2023년 독일의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으며<sup>262)</sup>, 이에 연대할증료 5.5%가 추가됨

〈표 III-9〉 독일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과세소득(유로)	세율(%)
10,908 이하	0
10,909 ~ 15,999	14
16,000 ~ 62,809	23.97
62,810 ~ 277,825	42
277,825 초과	45

주: 산출세액에 연대할증료 5.5% 추가됨  
 자료: 「독일 소득세법(EStG)」 제32a조

261) 「독일 법인세법(KStG)」 제23조

262) 「독일 소득세법(EStG)」 제32a조

- 또한, 납세자가 결혼하였을 때는 연방소득세 신고 시 과세단위로 개인별 과세 또는 배우자와의 소득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sup>263)</sup>
  - 배우자 합산과세는 납세자와 배우자가 「독일 소득세법」상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영구적으로 별거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음<sup>264)</sup>
  - 배우자와의 소득 합산과세를 선택한 경우 세액은 이분이승방식으로 계산되며<sup>265)</sup>, 초과누진세율 적용 완화로 개인별 과세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 비해 세액이 적게 계산됨

#### 4) 이익의 분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사업소득은 별도의 과정 없이 개인사업자 소득으로 귀속되나, 법인의 경우 세후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 등의 절차를 통해서 출자자(개인)의 소득으로 귀속됨
- 법인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 일반적인 배당에 대해서는 25%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되며<sup>266)</sup>, 별도의 이중과세 조정을 하지 않음
  - 연대할증료 5.5%가 추가되며, 필요경비 성격으로 1인당 801유로가 소득공제됨
  - 종합소득 세율이 25%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실제 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 개인주주가 물적회사의 지분을 최소 25% 이상 보유하거나, 최소 1%의 지분을 가지고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법인의 경제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sup>267)</sup>

263) 「독일 소득세법(EStG)」 제26조

264) 「독일 소득세법(EStG)」 제26조 제1항

265) 이분이승방식은 부부가 소득을 합산한 후, 이를 다시 2로 나누어 그 나눈 금액을 누진세율적용 대상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그 산출세액에 2를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임

266) 「독일 소득세법(EStG)」 제2조 제5b항

-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가 적용됨

## 다. 유보이익 과세제도

- 독일의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유보이익 저율과세를 특례제도를 부여함<sup>268)269)</sup>
  - 2008년 1월 1일 독일은 법인세의 법정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였으며, 법인에 대한 세 부담 인하에 상응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인적 회사의 파트너십 사원에게도 해당 특례제도를 부여함<sup>270)</sup>
    - 인적회사의 파트너십 사원의 경우에는 자산비교법을 통해 계산한 영업소득에서 결정된 이익 상당액이 10% 이상이거나 1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는 유보이익에 대해서 28.5%의 세율 과세를 신청 할 수 있음
  - 유보이익은 당해연도의 사업소득(자산비교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소득)에서 인출액과 순 예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 사업체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문장1 또는 동법 제5조에 따른 자산비교를 통해 영업소득을 계산할 때만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있음
  - 관할세무서 신청에 따라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음 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신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음
  - 28.5% 세율에 연대할증료 5.5% 추가됨
- 유보이익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은 유보이익은 추후 인출 시 25% 세율로 후속 과세됨

267) 「독일 소득세법(EStG)」 제32d조 제2항

268) 「독일 소득세법(EStG)」 제34a조 및 BMF, 11. 8. 2008 - IV C 6 - S 2290-a/07/10001

269) IBFD, "Germany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y 202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4.1.&refresh=1698906940654%23ita\\_de\\_s\\_1.4.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4.1.&refresh=1698906940654%23ita_de_s_1.4.1.), 검색일자: 2023. 8. 18.

270) 김유찬·이유향(2009), p. 47.

- 후속 과세 대상 소득금액은 유보이익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은 유보이익에서 소득세 및 연대할증료 납입액을 차감한 금액임
- 인출되지 않는 유보이익은 이월되며, 과세연도마다 별도로 문서화되어 관리되어야 함
- 유보소득에 대한 후속과세는 다음의 경우에도 발생함
  - 회사, 사업 단위, 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 등을 매각하는 경우
  - 회사, 파트너십 이익을 기부하거나 회사의 조직 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순자산 비교방식에서 순수익 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 25% 세율에 연대할증료 5.5% 추가됨

##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 1. 국제비교

#### 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무상 비용 인정 기준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무상 비용 구성항목 중 대표자의 사적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무용 차량비용, 접대비, 대표자 인건비, 대여금 등 자금인출과 관련된 세무상 비용 항목을 검토함

#### 1) 업무용 차량비용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 업무용 차량비용과 관련하여 조사대상국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으나, 단 업무 사용분을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 우리나라, 영국, 독일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를 적용대상자로 두고 있으며, 법인은 보유한 모든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보유한 차량 중 1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비용 인정이 가능함
  -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 사용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됨
- 영국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사업을 위해 구매하고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자본공제, 리스비용, 기타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편법으로 산정 가능함

- 연간 주행거리가 1만마일 이하인 경우 1마일당 45펜스, 1만마일 초과한 경우 초과 1마일당 25펜스 적용함
  - 독일의 경우 업무용 차량의 세무상 비용 한도를 계산할 때 1%법 또는 주행일지법으로 선택 가능하나, 개인사업자의 차량이 선택 사업용 자산일 경우에는 주행일지법으로만 비용 한도를 계산하여야 함
    - 사업주 자신의 차량을 업무에 10% 이상 50% 미만 사용할 때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업무와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기준거리비율 또는 실제비용 기준 선택이 가능함
  - 일본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은 세무상 비용 인정 가능하나, 법령에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규정하지 않음
- 조사대상국 중 접대비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무상 비용 인정 기준이 다른 국가는 일본이 유일함
- 일본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되면 한도 없이 100% 공제 가능하나,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 인정 안 됨
    - 2014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대규모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 접대음식비의 50% 손금산입이 가능함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동일하나, 복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한도 안분과 관련하여 차이가 존재함
    -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법인의 경우 사업장 구분을 무시하고 하나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적용함
  - 미국은 대표자 본인 또는 직원이 참석하는 접대의 경우 사치스럽지 않은 범위에서 식사비용의 50%는 공제 가능함
  - 영국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고객에 대한 업무용 접대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음
  - 독일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증빙서류를 갖추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고객 접대의 경우 해당 금액의 70%까지 세무상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음



## 2) 대표자 인건비

- 조사대상국 중 일본은 개인사업자의 가족직원<sup>271)</sup>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세무상 인정되는 한도를 정함
  - 개인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며, 과세연도 중 6개월 이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에만 종사하는 배우자 및 15세 이상 친족 직원의 인건비는 개인사업자의 소득계산상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가 청색신고자인 경우 실제 지급한 급여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sup>271)</sup>
  - 개인사업자가 백색신고자인 경우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① 해당 가족 직원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86만엔, 그 외의 경우에는 50만엔
    - ② 사업소득금액을 가족 직원 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금액
  
- 조사대상국 모두 법인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자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통상적·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까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가능함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됨
    -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소유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함
  - 미국의 경우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통상적인 상황에서 적정한 수준 까지만 비용으로 처리됨
  - 일본의 경우 대표자 급여는 임원급여로 취급되며, 임원급여는 정기동액급여, 사전 확정급여, 일정요건을 만족한 실적연동급여만이 손금 산입되고 과다하거나 부당

271) 일본에서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할 때 청색신고 또는 백색신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청색신고는 일정 수준의 장부기장 수준을 유지하고 해당 장부를 바탕으로 정확한 신고를 하는 자가 소득계산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세무서의 사전승인을 요하며, 이러한 혜택 중 하나가 가족직원<sup>271)</sup>에 대한 실제 급여 지급액 전액 공제임(청색사업전종자공제). 참고로 백색신고는 청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하게 높게 지급된 급여는 손금불산입 됨

- 영국의 경우 전적으로 독점적으로 거래목적으로 지출되는 주주 겸 임원급여는 손금으로 공제 가능함
- 독일의 경우 주주 겸 임원 급여는 「민법」상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된 급여 중 통상적인 범위까지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음

〈표 IV-2〉 조사대상국의 주주인 대표자 인건비 과세제도 비교

국가	주주인 대표자 인건비
우리나라	지배주주 등 <sup>1)</sup> 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됨
미국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통상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까지만 비용으로 처리됨
일본	일정 형식을 갖춘 급여만이 손금 산입되나 <sup>2)</sup>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높게 지급하는 급여는 손금 불산입됨
영국	전적으로 독점적으로 거래목적으로 지출되는 주주 겸 임원급여는 손금으로 공제 가능함
독일	주주 겸 임원의 급여는 「민법」상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된 급여 중 통상적인 범위까지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음

주: 1)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소유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함

2) 일본의 경우 대표자 급여는 임원급여로 취급되며, 임원급여는 정기동액급여, 사전확정급여, 일정 요건을 만족한 실적연동급여만이 손금산입 됨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 3) 자금인출

- 조사대상국 모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에 자금의 투입과 인출이 자유로운 편이나, 우리나라와 독일은 초과인출 시 해당 지급이자 상당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음

- 우리나라와 독일의 초과인출에 대한 개념은 다름
  - 우리나라에서 초과인출금이란 부채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개인사업자 경우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가사관련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됨
  - 독일에서 초과인출액은 사업연도 이익과 예금의 합을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을 말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초과인출액의 6%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부분이 필요 경비(또는 손금) 불산입됨
- 법인의 주주인 대표자 대여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미국, 독일이 세무상 불이익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 관련해서는 조사대상국 모두 적정이자 수취 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인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하여 이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의 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 미국의 경우 주주인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이 회사 사업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 상환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며, 대여금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연방 요율로 이자를 수취하는 등 일정 형식을 갖추어야 함
  - 일본의 경우 주주인 대표자(또는 임원)가 법인으로 자금을 빌릴 때 적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영국은 주주이자 이사인 자가 대여금에 대하여 공시이율 이하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할인된 이자는 현물급여로 처리함
  - 독일의 경우 대표자 대여금과 관련하여 법인이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거나 대여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자금을 대여할 때는 은닉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음

〈표 IV-3〉 조사대상국의 주주인 대표자 대여금 과세제도 비교

국가	주주인 대표자 대여금 세무상 불이익 규정	주주인 대표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우리나라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정이자 수취(가지급금 인정이자)
미국	1년 이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함	연방 요율로 이자 수취
일본	-	적정이자 수취(무상 또는 저리의 경우 임원의 급여로 처리)
영국	-	적정이자 수취(무상 또는 저리 이자의 경우 현물급여로 처리함)
독일	은닉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음	적정이자 수취(무상 또는 저리의 경우 은닉배당 처리)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율

- 조사대상국 모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율이 달리 적용되며, 가장 많이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임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8단계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며, 법인은 4단계 누진세율(9%~24%)임
- 미국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7단계 누진세율(10%~37%)을 적용하나, 법인은 21% 단일세율을 적용함
- 일본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7단계 누진세율(5%~45%)을 적용하나, 법인의 경우 23.2% 기본세율을 적용함
  - 단, 자본금이 1억엔 이하인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이 연 800만엔 이하인 경우 15% 세율을 적용하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이 15억엔 넘는 경우 19% 세율이 적용됨
- 영국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3단계 누진세율(20%~45%)을 적용하며, 법인은 기본세율이 25%이나 과세표준이 5만파운드 이하면 1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함

- 과세표준이 5만파운드에서 25만파운드 사이인 회사의 경우 기본세율 25%를 적용한 뒤 표준한계경감비율(3/200)에 의해 세액을 경감함
- 독일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4단계 누진세율(14%~45%)을 적용하며, 법인은 15% 단일세율을 적용함

〈표 IV-4〉 조사대상국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율 비교

국가	개인사업자	법인
우리나라	8단계 누진세율 (6%, 15%, 24%, 35%, 38%, 40%, 42%, 45%)	4단계 누진세율 (9%, 19%, 21%, 24%)
미국	7단계 누진세율 (10%, 12%, 22%, 24%, 32%, 35%, 37%)	21% 단일세율
일본	7단계 누진세율 (5%, 10%, 20%, 23%, 33%, 40%, 45%)	23.2% 단일세율 <sup>1)</sup>
영국	3단계 누진세율(20%, 40%, 45%)	기본세율 25% 및 낮은 세율 19% <sup>2)</sup>
독일	4단계 누진세율(14%, 23.97%, 42%, 45%)	15% 단일세율

주: 1) 일본: 자본금 1억엔 이하의 법인 등의 경우, 소득이 연 800만엔 이하이면 15% 세율이 적용되며,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이 15억엔 넘는 경우 19% 세율이 적용됨

2) 영국: 과세표준이 5만파운드 이하인 경우 19%를 적용하며, 5만파운드를 초과한 경우 25%를 적용함(과세표준이 5만파운드에서 25만파운드 사이인 경우 기본세율 25%를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하고, 표준한계경감비율(3/200)에 의해 세액을 경감함)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다.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 개인유사법인이란 주식회사 등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사업주 임의로 운영되는 소규모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나 표준화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님
-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유사법인과 유사한 개념에 해당하는 조사대상국에서의 법인 형태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제도를 비교함
- 개인유사법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세법에서 규정한 유사형태로는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이 있으며, 이는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②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③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을 말함<sup>272)</sup>

- 미국은 인적지주회사와 폐쇄회사의 법인 형태가 있음
    - 인적지주회사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으로, 소득요건과 지분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요건: 조정총소득 중 60% 이상이 인적지주회사 소득<sup>273)</sup>
      - 지분요건: 5인 이하의 개인이 주식가치의 50% 초과하여 보유
    - 폐쇄회사란 5인 이하의 개인이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비공개기업 임<sup>274)</sup>
  - 일본은 개인유사법인과 유사한 개념의 동족회사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음
    - 동족회사란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자를 하나의 주주그룹으로 보았을 때 3개 이하의 주주그룹이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한 회사임
  - 영국은 개인유사법인과 유사한 개념의 폐쇄회사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음
    - 폐쇄회사란 5인 이하의 참여자 또는 이사의 통제하에 있는 비상장회사임
    - 통제한다는 것은 발행주식(의결권)의 50% 이상 또는 분배하는 이익의 50%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한 경우를 의미함
  - 독일은 개인유사법인과 유사한 개념의 법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조사대상국에서는 공통으로 지분소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최대주주뿐 아니라 그의 특수관계자를 고려하여 지분율을 판단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최대주주인 1인과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272)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법제화되지 않았음

273) 인적지주회사 소득은 배당금, 이자, 로열티, 연금, 임대료, 광물·석유·가스 로열티, 저작권 사용료, 제작된 영화 대여, 주주의 회사재산 사용에 대한 보상, 인적용역 계약 금액, 부동산 및 신탁으로부터의 소득 등임

274) 인적용역법인(personal service corporation)은 제외

한편, 일본의 동족회사는 3개 이하의 주주그룹의 주식 보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동족회사는 우리나라의 개인유사법인보다는 소유권이 좀 더 분산된 법인을 대상으로 함

-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공통으로 5인 이하의 개인이 보유한 지분으로 판단하므로 소유의 분산 측면에서 유사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표 IV-5〉 조사대상국의 개인유사법인 기준

국가	명칭	지분요건	기타요건
한국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50% 이상의 주식 보유	- 업종요건: 부동산임대업 -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미국	인적지주회사	5인 이하의 개인이 주식가치의 50% 초과하여 보유	- 소득요건: 조정총소득의 60% 이상이 인적지주회사 소득 <sup>1)</sup>
	폐쇄회사	5인 이하의 개인이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	-
일본	동족회사	3개 이하의 주주그룹 <sup>2)</sup> 이 발행주식(또는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여 보유	-
영국	폐쇄회사	5인 이하의 참여자 또는 이사가 발행주식(또는 의결권) 50% 이상 보유	-

주: 1) 인적지주회사 소득이란 배당금, 이자, 로열티, 연금, 임대료, 광물·석유·가스 로열티, 저작권 사용료, 제작된 영화 대여, 주주의 회사재산 사용에 대한 보상, 인적용역 계약 금액, 부동산 및 신탁으로 부터의 소득 등임

2)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자를 하나의 주주그룹이라 함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 개인유사법인은 1인 또는 소수 주주에 의해 지배되고 운영되는 특징이 있고, 그로 인해 일반법인과 달리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가 확인됨

- 우리나라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의 경우 기업업무추진비와 업무용승용차의 비용 한도를 일반법인의 50%로 제한하고 있고,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인적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유보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고 있고, 폐쇄회사에 대해서는 수동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의 공제는 수동 소득으로 제한하고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은 본인의 위험부담액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제한하며, 주주(임원) 보수에 대해서는 합리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음
  - 일본의 동족회사에 대해서는 동족회사의 행위 등이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경우 그 행위를 부인하는 행위계산부인제도와 동족회사의 임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요건 만족 시 임원으로 간주하여 임원급여제도를 적용함
  - 영국의 폐쇄회사에 대해서는 참여자 및 이사의 대여금에 대해 33.75%의 추가법인세를 과세하고, 폐쇄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중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25%의 기본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 폐쇄투자지주회사란 무역 및 상거래 등을 하지 않는 회사임
- 개인유사법인에 적용되는 제도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조사대상국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비용 공제를 제한하거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없음
  - 미국의 수동활동 손실제한 규정과 손실에 관한 위험부담 규정은 폐쇄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하는 제도이고, 이는 폐쇄회사가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지님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미국의 폐쇄회사에서 주주(임원) 보수에 대해서 합리성을 고려하여 비용을 인정하는 제도와 일본 동족회사에서 세무상 임원간주제도의 경우, 개인유사법인의 특성상 최대주주 및 임원의 보수 규정에 대해 일반법인보다는 엄격한 기준으로 비용처리를 허용하는 제도임
  - 일본의 동족회사 행위계산부인제도는 우리나라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와 유사한데, 우리나라는 모든 법인에 적용하는 반면 일본은 동족회사에만 적용함
  - 영국은 폐쇄회사의 참여자 및 주주의 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고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는 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표 IV-6〉 조사대상국의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국가	명칭	과세제도	내용
한국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 <sup>1)</sup>	비용 한도 축소	업무용승용차비용 및 업무추진비의 손금한도를 일반법인 대비 50%로 제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 확인받은 후 신고
미국	인적지주 회사	유보소득 과세	유보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법인세 추가 과세
	폐쇄 회사	수동활동 손실제한	수동활동 손실은 수동활동 소득으로 제한 <sup>2)</sup>
		손실에 관한 위험부담	사업 및 소득창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해당 활동에 대한 본인의 위험부담액을 한도로 공제
주주(임원) 보수 제한	보수의 합리성 고려 <sup>3)</sup>		
일본	동족 회사	행위계산 부인	동족회사의 행위 또는 계산이 법인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경우 그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
		세무상 임원간주	동족회사 임원이 아니더라도 다음 요건 만족 시 세무상 임원으로 간주하여 임원급여규정 적용 <sup>4)</sup> - 3개 이하의 주주그룹이 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의 50% 초과 - 해당 직원이 속하는 주주그룹의 소유비율이 10% 초과 - 그 직원(배우자 및 50% 관계회사 포함)의 소유비율이 5% 초과
		유보소득 과세	특정동족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해 10/15/20% 세율로 추가 과세
영국	폐쇄 회사	대여금과세	참여자 및 이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33.75%의 세율로 과세
		낮은 세율 적용 배제 <sup>5)</sup>	19%의 낮은 세율 적용 불가(25%의 기본세율만 적용)

주: 1) 지분요건 외에 ①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 등, ②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추가요건 적용  
 2) 수동활동이란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무역 또는 비즈니스 활동과 모든 임대활동임  
 3)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제3자가 합리적이라 생각하는지, 주주를 고용한 회사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만 제공되는지, 주주가 보유한 직위에 대한 보상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근 검토가 수행되었는지, 보상이 주주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4) 임원급여규정이란 정기동액급여, 사전확정급여, 일정 요건 만족한 실적연동급여만 손금으로 산입하는 규정임  
 5) 폐쇄투자지주회사에 한해 적용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라. 유보소득 과세제도

- 우리나라는 2020년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의 도입을 추진한 바 있고 법제화되지 않았으나, 조사대상국에서는 유보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을 기초로 비교함
  
- 유보소득 과세제도는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 중임
  - 미국은 지주회사나 면세법인 같은 특정 법인을 제외한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일본은 특정동족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세대상 범위에 차이가 있음
    - 특정동족회사는 최대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개인 및 법인)가 50%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으로 거의 최대주주 1인 그룹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으로 한정함
    - 미국은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유보이익과세제도를 시행하지만, 일반법인은 비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인적지주회사의 경우 합리적 수준 여부에 관한 판단 없이 과세함
  - 우리나라에서 제안되었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역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법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적극적 사업법인은 제외함
    - 적극적 사업법인이란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및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채권 등의 처분수입이 전체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인 법인임
  
- 우리나라에서 제안되었던 유보소득 과세의 세 부담 주체는 주주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소득을 유보한 법인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1인 주주에 의해 운영되는 법인이라면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음
  - 우리나라는 배당가능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적정유보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유보소득에 주주의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간주배당으로 보아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임
  - 미국과 일본은 유보소득에서 유보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 세율과는 다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함

- 미국은 유보이익에서 25만달러를 유보공제액으로 차감하고 세율은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함
- 일본은 유보소득에서 ① 소득 등의 40%, ② 연 2천만엔, ③ 기말 자본금의 25%에서 이익적립금을 차감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유보공제액으로 차감하고 10/15/20%의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함

- 독일은 개인사업자가 유보이익에 대해 저율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의 유보이익은 과세소득에서 인출액과 순예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 유보이익에 일반소득세율(최고 45%)보다 낮은 28.5% 세율로 과세함

〈표 IV-7〉 조사대상국의 유보소득 과세제도

국가	명칭	대상	적용제외/요건	과세내용
한국 <sup>1)</sup>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특정 내국 법인 <sup>2)</sup>	적용 제외: 적극적 사업법인 <sup>3)</sup>	- 초과유보소득을 주주 지분율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간주배당 = 초과유보소득 × 지분율 • 초과유보소득 = 유보소득 - 적정유보소득 • 적정유보소득: 배당가능소득의 50% 및 자기 자본의 10% 중 큰 금액 • 실제 배당 시 중복과세를 조정
미국	유보 이익세	모든 법인	적용 제외: 개인지주회사, 면세법인, 수동적 외국인투자회사	- 해당 법인에 유보이익세 과세 • 유보이익세 = 유보이익 과세표준 × 20% • 유보이익 과세표준 = 조정된 과세소득 <sup>4)</sup> - 지불된 배당금 - 유보이익공제 • 유보이익공제: 25만달러
일본	유보소득 과세	특정 동족 회사 <sup>5)</sup>	요건: 1인과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총수(출자액)의 50% 초과 보유	- 해당 법인에 유보소득세 과세 • 유보소득세 = [사업연도 소득 등 - (사외유출 + 법인세 등) - 유보공제액] × 세율 • 유보공제액: 다음 중 가장 큰 금액 ① 소득 등의 금액 × 40% ② 연 2천만엔 정액 ③ 기말 자본금의 25% - 이익적립금액 • 세율: 10/15/20% 누진세율

〈표 IV-7〉의 계속

국가	명칭	대상	적용제외/ 요건	과세내용
독일	유보이익 저율 과세 <sup>8)</sup>	개인 사업자	-	- 개인사업자의 유보이익 저율 과세 · 유보이익에 대하여 28.5%의 세율로 과세 <sup>6)</sup> · 유보이익 = 과세소득 - 인출액과 순예금액 · 과세특례가 적용된 유보이익의 인출 시 25%의 세율로 과세 <sup>7)</sup>

주: 1) 한국은 2020년 발의되었던 개정안의 내용이며,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님

2)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3)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및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채권 등의 처분수입이 전채수입의 일정 수준(예: 50%) 미만인 법인

4) 과세소득에서 연방소득세 및 초과이윤세 등의 세금, 자선기부금, 일반적인 자본손실, 세후순자본 이익이 공제되고 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결손금은 공제되지 않음

5) 특정동족회사란 최대주주 1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회사임

6) 일반 소득세율은 14~45%의 4단계 누진세율임. 5.5%의 연대할증료 추가됨

7) 유보이익 저율과세에 의한 소득세와 연대할증료 납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함

8) 개인사업자는 유보이익 저율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자료: 본문 참조하여 저자 작성

## 2. 시사점

### 가. 개인유사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 가능성 제한 필요성

□ 대표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무상 비용처리 규정을 검토한 바, 조사대상국에서는 대부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영국의 업무용 차량비용, 일본의 기업업무추진비와 가족직원 인건비의 경우 차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차량비용의 계산을 실제비용이 아닌 간편법  
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함

- 일본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기업업무추진비를 100% 공제할 수 있지만, 법인은 원칙적으로 손금 인정을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의 가족직원에게 대한 인건비는 세무상 인정되는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1인 주주 또는 가족구성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 가족 구성원을 통한 소득 분산 및 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등과 같은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유사법인에 한해서는 이를 제한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는 1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개인유사법인은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0년 현재 전체 법인 중 33%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법인에서 1인 법인이 증가하는 것은 은퇴 연령자의 창업 증가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6~45%)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9~24%)을 적용받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임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법인 설립 건수는 전체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하였지만 60대 이상의 법인 설립은 전년 동기 대비 26.3%로 전 연령대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음<sup>275)</sup>
    - 고령자의 창업 증가는 재산기준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고 급여기준 보험료를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회피의 목적일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과세체계가 이루어져 있어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적용하는데, 1인 주주 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과세상 달리 적용함에 따라 기업 형태 간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275) 『동아일보』, 「일 그만둘 60대들, 1인-가족법인 설립 이유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07/103841537/1>, 검색일자: 2023. 8. 20.

-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당해 연도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한편 1인 법인의 주주인 대표자는 급여 또는 배당 형태로 수취하는 시점에 과세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배당과 급여로 소득을 분산할 여지가 있음
  - 과세제도의 차이가 기업의 조직 형태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세 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체계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유사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통해 조세회피 가능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용 승용차비용 업무추진비의 손금한도를 일반법인의 50%로 제한하고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조사대상국에서 개인유사법인에 적용하는 제도 중 법인자금의 사적 사용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는 ① 주주인 임원 보수에 대한 제한, ② 손실공제에 대한 제한, ③ 주주 대여금에 대한 과세가 있음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주주인 임원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보수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지만, 폐쇄회사의 주주(임원)인 경우 보수 금액의 합리성을 엄격히 판단하도록 함
    - 일본의 경우 동족회사의 지배력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임원으로 간주하여 급여규정을 적용함
  - 미국의 경우 수동손실제한 규정은 폐쇄회사 및 개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폐쇄회사가 갖는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수동손실제한 규정은 1인 주주인 납세자가 실제 참여하지 않은 사업활동이나 임대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원천소득과 상계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영국에서 폐쇄회사의 주주인 이사의 대여금에 대하여 추가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을 상당히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본 동족회사에 적용되는 행위계산부인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 규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이미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이라 할 수 있음
- 개인유사법인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 가능성 제한을 위해서는 주주인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과 손실공제에 관한 규정 및 대표자의 대여금에 관한 규정 보완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급여 및 배당 또는 세율이 낮은 가족구성원의 급여를 통해 소득을 분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법상 보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시행규칙에 마련하거나 회사법상 고용 계약서에 보수 결정방식과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sup>276)</sup>
  - 또한 사업과 무관한 활동에 사용하여 발생한 손실을 사업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대표자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규제를 마련할 수 있음

#### 나.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타당성 재검토

-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의 최고 과세표준 구간인 1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은 38%에서 45%로 7%p 상승하였으며,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법인세율은 20%에서 19%로 1%p 하락하여 그 격차가 18%에서 26%로 8%p 증가하였음

276)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는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 있는 자 포함)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함. 그러나 상기 시행령 규정은 적정보수의 기준치를 동일한 직급의 임원의 보수로만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회사 임직원의 보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인 임원은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음. 또한, 적정 보수에 대한 이외 기준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 사실상 정립되어가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세법상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됨

-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 최고 과세표준 구간(10억원 초과)의 개인사업자(45%)와 법인(19%)의 세율의 차이는 26%p로 조사대상국 중 비교적 높은 편임
  - 독일이 30%p로 가장 높고 우리나라가 26%p로 두 번째로 높으며, 그다음은 일본(21.8%p), 영국(20%p), 미국(16%p) 순임
- 이러한 세율 격차로 인해, 고소득이 예상되는 사업일수록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의 기업 형태를 선호하게 되고, 법인은 소득세 누진과세 회피를 위해 분배보다는 사내 유보를 증가시킬 유인이 존재함
- 법인의 유보소득을 통한 소득세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2020년 최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적정유보 소득을 초과하는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고 현재 유보소득 과세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음
- 당시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sup>277)</sup> 인상되면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차이가 커지고 높은 소득세율을 회피하고자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었음
-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는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미실 현수익에 대한 과세문제, 개인유사법인의 범위 및 배당간주 적용대상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은 보류되었음
- 최근의 1인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지배하는 법인 현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도입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거에도 지상배당과세제도<sup>278)</sup>와 적정유보초과소득<sup>279)</sup>에 대한 법인세 과세

277)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10억원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종전 42%에서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이 추가되었음

278) 지상배당과세제도는 법인의 소득이 주주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주주의 입장에서 이 부담을 지연시키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의 50% (중소기업 75%)를 초과하여 유보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임. 동 제도는 배당을 촉진하고 사내유보를 저해하여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기업자금의 운영상 부담을 주며, 주주 입장에서 실제로 배당하지 못한 미실현수익에 과세한다는 논란에 의해 폐지되었음(재무부, 『1985 간추린 개정세법』, p. 15)

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나, 각각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기업정책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음

- 제도의 도입 취지는 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회피 현상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실제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세 부담에는 작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sup>280)</sup>
  - 예를 들어, 5억원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 부담은 개인사업자가 1억 6,600만원(6~40% 세율 적용), 법인은 7,500만원(9~19% 세율 적용)으로 법인이 개인사업자 세 부담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개인유사법인의 경우, 소득세 누진과세 회피를 위하여 배당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임
  
- 조사대상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고려하였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사례는 없음
  - 미국과 일본에서 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데, 사외유출, 배당 및 법인세 등을 차감한 유보소득<sup>281)</sup>에 유보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에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임
    - 미국의 경우,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사업상 비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유보이익에 대해 유보이익세를 부과하고, 개인유사법인 성격의 인적지주 회사의 경우에는 합리성의 기준을 판단하지 않고 자동으로 유보이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함

279) 자기자본의 총액 100억원 초과 비상장법인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법인이 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적정 수준(법인세 공제 후의 사업소득 또는 자기가본의 10% 중 큰 값)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사내 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소득에 25%의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기업정책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이중과세라는 경제계의 주장 및 IMF의 권고에 의해 2001년말 폐지되었음

280) 기획재정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2020. 11. 4, p. 1.

281) 사외유출, 배당, 법인세 등 차감

- 일본은 유보소득 과세대상을 동족회사 중 최대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지배하는 특정동족회사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즉, 유보소득 과세의 적용 범위를 미국은 수동소득 성격인 인적지주회사소득이 60% 이상인 법인으로 한정하고, 일본은 최대주주그룹 지분율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의 입법 추진 사례와 미국과 일본의 과세 사례를 볼 때, 사내 유보에 대한 과세는 배당간주과세와 법인세 추가과세의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각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sup>282)</sup>
- 조세형평성 개선을 위해서는 배당간주과세 방식이 효과적인 방식임
    - 배당간주과세의 경우 배당하지 않더라도 배당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격차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반면, 법인세 추가과세는 세율의 조정으로 세 부담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지만 소득세 세율과 완전히 일치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법인세 추가과세가 적절함
    -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절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과세의 근거가 되는 담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세저항이 큰 것은 사실임
    - 법인세 추가과세 방식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부분에 추가과세를 한다는 면에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의 성격을 소득세보다는 과다유보라는 행위에 대한 규제 성격의 과세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원천징수라는 납세행정 문제에 있어서는 법인세 추가과세가 유리한 방식임
    -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소득세법」 제130조에서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음
    - 배당간주제도의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그런데도 법인에

282) 이종교(2021), pp. 424~426.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다면 다소 행정편의적 조치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비해 법인세 추가과세는 법인이 부담하는 추가적인 납세행정은 크지 않으므로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없음

- 앞으로도 법인의 사내 유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소득세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용대상의 범위 및 초과유보의 개념을 설정하고, 개인사업자와의 세 부담 형평성을 고려한 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다각적인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국세청,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개인유사법인 중점관리」, 2001. 2. 16.  
\_\_\_\_\_,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2020.
- 국회예산정책처,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2011.  
\_\_\_\_\_, 『조세정책 토론회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2016.
- 기획재정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2020. 11. 4.  
\_\_\_\_\_,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3. 7. 27.
- 김완석·정지선,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8.
-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김진수,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4.
- 박훈, 『미국세법』, 도서출판원, 2016.
- 안택식, 「회사의 본질에 관한 담론」, 『법과 기업연구』, 제4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용혜인, 「개인유사법인 큰폭 증가세...소득세 탈루통로 방치 상태」, 보도자료, 2021. 10. 6.
- 이덕희·박종국·홍영은,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사업자의 조세전략」, 『세무와 회계 연구』, 제8권 제2호,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9.
- 이상엽·김태훈·홍성열,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연구』, 세법연구 13-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이상엽·홍성희·이서현, 『주요국의 감가상각제도 비교연구』, 세법연구 20-0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이종교,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에 대한 소고」, 『법조』 제70권 제3호, 법조협회, 2021.

- 이창희, 『파트너십에 대한 적정과세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2001.
- \_\_\_\_\_, 「독일법상 인적회사와 조합의 과세」, 『조세학술논집』 19, 한국국제조세협회, 2003.
- \_\_\_\_\_, 『세법강의』, 박영사, 2021.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재무부, 『1985 간추린 개정세법』, 1986.
- 전병목,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 세원 이동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전병목·송은주·서동연, 『주요국의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 연구』, 세법연구 22-0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전병목·송은주·이서현, 『혁신성장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연구』, 세법연구 21-0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정순현, 『독일 회사법 개설』, 도서출판 한아름, 2019.
- 조남철, 『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 삼일인포마인, 2019.
- 최준영·박종수, 「폐쇄회사의 유보이익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17.
- 홍범교·박수진·김효림, 『주요국의 이사 보수 과세제도 -과다한 인건비 공제 여부를 중심으로-』, 세법연구 22-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홍범교·이형민·유지선, 『국조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연구』, 세법연구 11-08, 한국조세연구원, 2011.
- 홍범교·정훈·홍성희, 『도관과세제도 연구 -공동사업과 동업기업 과세제도를 중심으로-』, 세법연구 17-0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일본 국세청, 『会社標本調査』, 2023.
- 勝野 成紀, 「事業体に対する課税形態と実務上の問題点について」, 租税調査会研究報告第 23号, 日本公認会計士協会, 2011.

四元秀伸, 「留保金課税制度に関する一考察」, 法学研究科法律学専攻博士前期課程修了, 2022.

Croner-i, *British Master Tax Guide 2019-20*, 2019.

IRS, “Corporations,” 2022.

\_\_\_\_, “Tax Guide for Small Business for use in preparing 2022 Return,” 2023.

\_\_\_\_, “Travel, Gift, and Car Expenses for use in preparing 2022 Returns,” 2022.

\_\_\_\_, “Employer's Tax Guide to Fringe Benefits For use in 2023,” 2023.

\_\_\_\_, “Passive Activity and At-Risk Rules For use in preparing 2022 Returns,” 2022.

PWC, “2022 Global Automotive Tax Guide,” 2022.

###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세청, <https://www.nts.go.kr/>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

삼일아이닷컴, <https://www.samili.com/>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

세명일보, <http://www.smnews.co.kr/>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일본 총무성 통계국(総務省統計局), <https://www.stat.go.jp/>

濱田會計事務所, <https://www.mikagecpa.com/>

国税不服審判所, <https://www.kfs.go.jp/>

MONEYIZM, <https://www.all-senmonka.jp/>

フリーウェイ, <https://freeway-keiri.com/>

風間稅務會計事務, <http://www.kojin-taxoffice.jp/>

税理士法人新日本, <http://www.bestzeirishi.jp/>  
미국 국세청(IRS), <https://www.irs.gov/>  
영국 정부(GOV.UK), <https://www.gov.uk/>  
독일 국세청, <https://www.bzst.de/>  
독일 창업지원포털, <https://www.existenzgruender.de/>  
독일 통계청, <https://www.destatis.de/>  
Accountancy Partnership, <https://www.theaccountancy.co.uk/>  
AccountsPortal, <https://www.accountsportal.com/>  
AICPA & CIMA, <https://www.thetaxadviser.com/>  
Croner-i, <https://library.croneri.co.uk/>  
Haufe, <https://www.haufe.de/>  
HK Hamburg, <https://www.ihk.de/>  
IBFD, <https://research.ibfd.org/>  
Investopedia, <https://www.investopedia.com/>  
IRS Video Portal, <https://www.irsvideos.gov/>  
Legal Zoom, <https://www.legalzoom.com/>  
PYA, <https://www.pyapc.com/>  
Rosenberg Chesnov, <https://rcmycpa.com/>  
Rossmartin, <https://www.rossmartin.co.uk/>  
Taxinsider, <https://www.taxinsider.co.uk/>  
Upcounsel, <https://www.upcounsel.com/>  
Wolters Kluwer, <https://www.wolterskluwer.com/>



세법연구 23-04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연구

---

발 행 2023년 9월 27일

저 자 전병목 · 송은주 · 서희진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미래기획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ISBN 979-11-6655-230-4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